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장학자료 2013-8호



#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www.goe.go.kr](http://www.goe.go.kr)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선생님과 함께하는

##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교육 자원, 인권조례에 부합하는 학생지도 절차 안내 등
- ❖ 인권친화적 학생지도의 성공적 사례를 제보 받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과 대안제시

# 2011-2013 학생인권상담사례집

## 발간에 부쳐

‘학생이 인권의 존엄한 주체로 존중받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책임감을 배우는 학교! 학습능력 배양을 넘어 학생의 자주적 인간상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주는 학교!’

이것은 교육기본법이 예정한 우리 학교의 모습이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행복한 경기교육의 꿈입니다. 2010년 10월, 이 행복한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시나브로 그 행복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통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아동인권 보호의 모범사례로 보고되기까지 한 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넘어 차별과 통제가 교사의 권위로 오도되기도 했으며, 학교 내 폭력적 문화가 마치 조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의 가치가 학교에 정착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접할 때마다 어찌면 인간적 존엄과 평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의 정신 속에 성장한 경험을 갖지 못한 과거 세대의 비인권적, 반평화적 트라우마가 인식할 수도 없는 사이에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각종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경기교육 가족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인권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인권의 가치가 학교문화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의 계속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보탠다면 ‘학생인권옹호관제도’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조례의 시행과 함께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일방만의 인권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작게나마 모아진 것이 이 상담사례집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접수되었던 상담사례의 열거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학교의 기틀을 다져가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인권옹호관들이 끊임없이 소통해 온 기록인 것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상담사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본격적인 인권상담 및 구제활동을 시작한 2011년 9월부터 2013년 1월 현재까지 접수한 총 1,429건의 상담 중, 인권조례에 규정된 10개의 권리영역별 대표사례 46건을 선정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례 열거에 그치지 않고, 영역별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의 취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학생인권옹호관제도인 만큼 일부 아쉬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성장의 과정으로 여겨주시고, 앞으로도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인권의 가치 아래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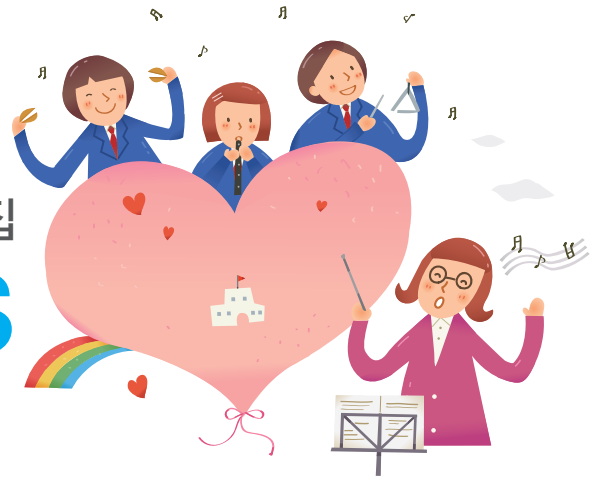
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인권의 1차적 옹호자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상담사례집이 우리 교육청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교육 및 학생지도의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함께 보호되고 증진되는 행복한 학교를 이루어가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 2011-2013 학생인권상담사례집

# CONTENTS



<b>I.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및 활동 개요</b>	07
<b>1.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개요</b>	09
1-1. 학생인권옹호관은 누구?	09
1-2.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10
<b>2. 학생인권옹호관은 어떻게 활동했나요?</b>	11
2-1. 활동 개요	11
2-2. 인권상담 통계 및 유형별 분석	13
2-3.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조치 통계 분석	16
2-4.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활동 현황	16
<b>II. 학생인권상담 사례 구성 개요</b>	17
<b>III.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b>	19
<b>1. 차별받지 않을 권리</b>	23
1-1. 성별에 의한 차별	23
1-2. 성적에 의한 차별	24
1-3.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	25
1-4.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25
1-5. 징계를 이유로 한 차별	26

<b>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b>	27
2-1. 체벌금지	29
2-2. 간접체벌	31
2-3. 체벌금지와 위기학생 지도	33
2-4. 언어폭력	38
2-5. 성희롱	39
2-6. 학교 내 안전사고	41
<b>3. 교육에 관한 권리</b>	43
3-1. 수업배제	45
3-2. 교내 행사 참여 강요	47
3-3.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48
3-4. 야간자율학습 강제	50
3-5. 휴식권 박탈	51
<b>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b>	53
4-1. 두발 제한	55
4-2. 교복 변형	56
4-3. 소지품 검사 강제	57
4-4. 일기장 검사	58
4-5. 휴대전화 압수	59
4-6. 수업 촬영	60
4-7. 교복 부착형 명찰	61
4-8. 학생정보 수집 절차	62
4-9. 학생 개인정보 누설	64
4-10. 학교예산 관련 정보의 공개	65
<b>5.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b>	67
5-1. 학교 내 종교 강요	69
5-2. 흡연축정 강제	70
5-3. 반성문 제출 강요	71
5-4. 학생의 의견표명의 자유	72



<b>6. 자치 및 참여의 권리</b>	73
6-1. 학생자치권의 보장	75
6-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와 학생참여	76
6-3.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	77
6-4. 학생회 외의 다른 학생기구의 설립	78
<b>7. 복지에 관한 권리</b>	79
7-1. 위기학생 지원	81
7-2.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82
7-3. 건강에 관한 권리	83
<b>8.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b>	85
8-1. 징계절차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87
8-2. 상벌점제와 학생인권	90
8-3. 징계 공고	90
<b>9.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b>	91
9-1. 청원권 보호	93
<b>10.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b>	95
10-1. 장애학생 괴롭힘	97
10-2. 장애학생 강제 식사지도	100
10-3. 장애학생 차별	101
10-4. 운동선수 인권보호	103
<b>11. &lt;특별사례&gt; 학교폭력과 학생인권</b>	105
11-1. 학교폭력 인지 후 초기 대응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08
11-2. 학교폭력 조사단계 및 심의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11
11-3. 학교폭력 선도조치 결과 통지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17
11-4.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118
11-5. 학교폭력 여부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의 처리 방안	119

# I.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와 활동 개요

## 1.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개요

- 1-1. 학생인권옹호관은 누구?
- 1-2.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 2. 학생인권옹호관은 어떻게 활동했나요?

- 2-1. 활동 개요
- 2-2. 인권상담 통계 및 유형별 분석
- 2-3.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조치 통계 분석
- 2-4.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활동 현황





# 1. 학생인권옹호관 개요

## 1-1. 학생인권옹호관은 누구?

▶ **설치**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침해의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2011년 5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입니다.

▶ **직무내용**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합리적 구제를 위해 인권조례 제41조 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공표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안의 구제와 학교 구성원 간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조례 제44조 및 제45조 의해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권
  - 관련 학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질의권, 현장조사권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권
- 시정권고 내용의 공표권 등

▶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에 따라 각 중심청의 인권옹호관과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중심청	관 할 지 역
1권역	성남 교육지원청	성남, 수원, 용인, 안성, 평택, 광주하남, 여주, 양평, 이천
2권역	안산 교육지원청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군포의왕, 부천, 광명, 김포, 시흥
3권역	의정부 교육지원청	의정부,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 1-2.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 ▶ **제도 목적** :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보호와 구제를 위해 활동한다는 의미는 학생인권만을 무조건 우선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호 지향**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시선에서 인권보호와 구제를 고민하지만, 학생인권을 매개로 연결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 학교문화 전체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교사를 위한 인권상담** :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선생님들과도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학생인권을 매개로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과 사전예방 차원의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권친화적 학생지도의 성공적 사례를 제보 받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 침해를 원인행위로 하는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학생인권옹호관은 어떻게 활동했나요?

### 2-1. 활동 개요

#### ▶ 인권옹호관 활동목표

직무지표 :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전략 목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강화

침해사안의 초기 개입을  
통한 피해 최소화

미래지향적 해결방안  
제시로 통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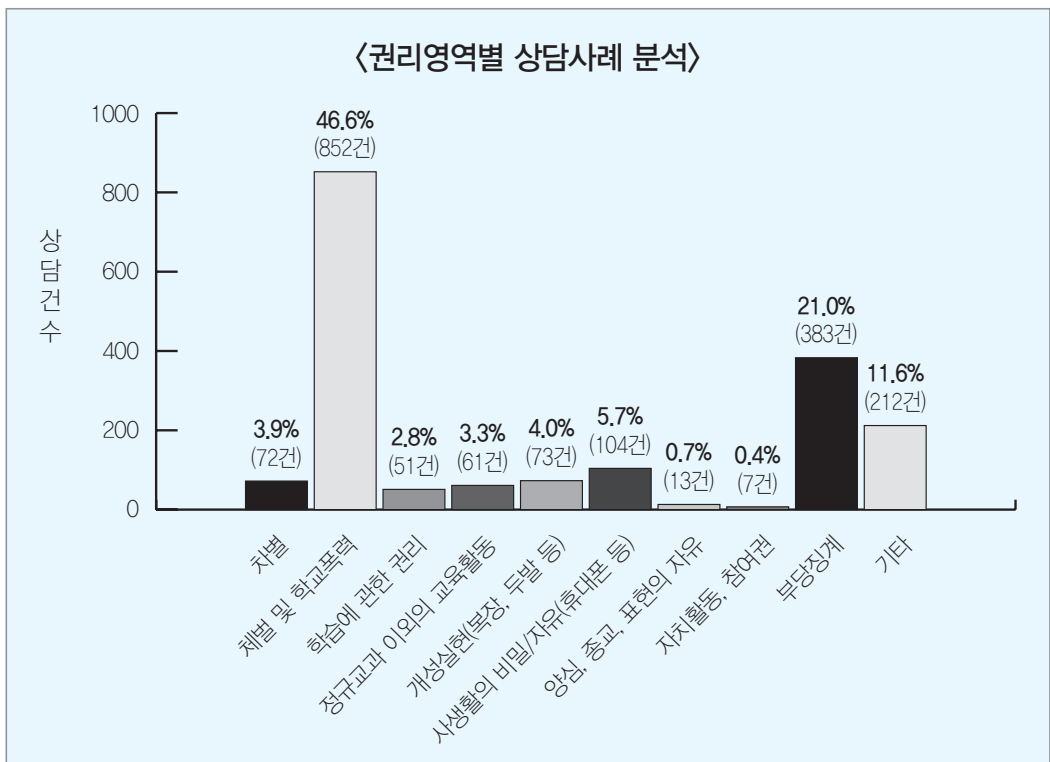
조사 및 구제활동의  
실효성 확보

교육현장의  
인권주류화 지원

#### ▶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총평

##### 1) 인권상담의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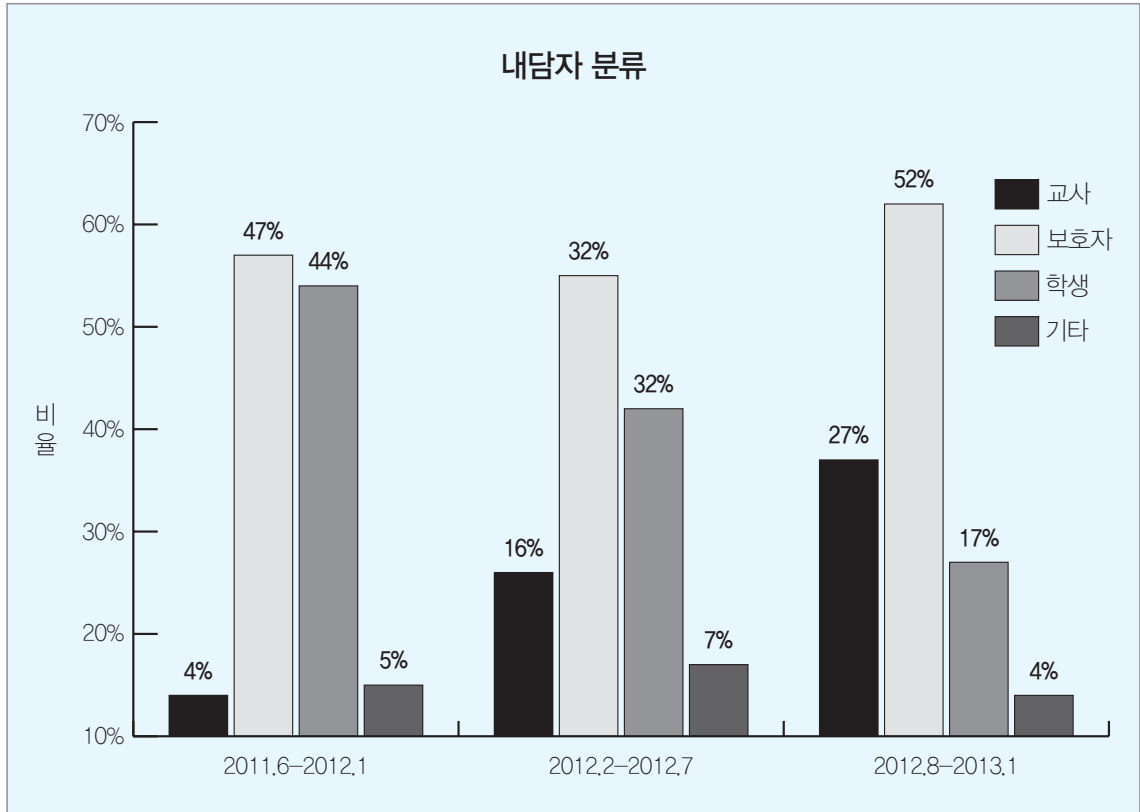
- 2011년 9월 학생인권옹호관의 본격적인 직무수행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상담이 증가하면서 2013년 1월 31일 현재까지 총 1,602건의 상담(각종 안내 상담 포함)이 접수되었습니다.
- 다만, 학교 내 보장되어야 할 학생인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상담의 내용은 체벌과 폭력(46.6%), 부당징계(21%) 등의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할 학생인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 교사에 의한 상담 증가

- 직무수행 개시 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사후구제적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교사와 학교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방안 문의 형태의 인권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옹호관제도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사후구제 중심의 상담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상담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이 징계절차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인권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 장애·운동선수·특성화고 학생 등 소수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총 211회의 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공공체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학교 내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인권의식 함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일회적·형식적 교육의 한계로 인권교육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시적 인권교육 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 제시

-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는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위주의 조치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치유와 복귀를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통합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오해로 인해 제도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활용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 2-2. 인권상담 통계 및 유형별 분석

### ▶ 인권상담의 의의

- 학생인권상담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묻고 합리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 학생인권상담은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 인권침해 당사자 간은 물론 학교 구성원 전체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을 통해 모두의 인권이 진일보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권상담은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와 선생님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 ▶ 상담유형별 통계와 분석

1) 권리영역별 상담사례 유형 분석(2011. 9. 1. ~ 2013. 1. 31.)

권리 영역 구분	인권조례 관련조항	상담(건)	영역별 비율(%)
차별	제5조	72	4
체벌	제6조 제2항	257	47
언어적 폭력	제6조 제3항	235	
학교폭력(금품갈취, 폭행 등)	제6조 제3항	197	
따돌림	제6조 제3항	11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제6조 제3항	51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51	6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제9조	61	10
개성실현(복장, 두발 등)	제11조	73	
사생활의 비밀/자유(휴대폰 등)	제12조, 제13조	104	0.7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제15조, 제16조	13	
자치활동, 참여권	제17조 내지 제19조	7	0.4
부당징계	제25조	383	21
기타		212	12
합계		1,828	100

※ 위 인권상담의 권리영역별 분석자료는 내담자 상담의 침해유형을 중복 분석한 자료임

- 2011년 9월 학생인권옹호관의 본격적인 직무수행 개시 이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체벌 및 폭력 등(47%) > 부당징계(21%) > 두발, 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10%)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제 등 학습권 침해(6%)’ 등의 순으로 학생인권침해 상담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인권조례 시행 4년차에 접어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담내용의 권리 영역별 비율은 2011년 9월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내 인권적 관심은 차별문제나 학생참여 및 자치 등 표현의 자유보다는 체벌이나 두발제한 등 인격권이나 개성실현권 등의 침해문제에 여전히 집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2011년 12월 이후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상담과 조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징계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볼 때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 연수 등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해자 · 학교급 · 설립형태별 상세 분석(2012.2.1. ~ 2013.1.31.)

상담 유형 구분	가해자			학교급				설립형태		
	교사	학생	기타	초	중	고	기타	공	사	기타
차별	50	3	4	9	23	24	1	40	9	8
체벌(직접체벌, 간접체벌)	148	0	7	24	55	74	2	120	28	7
언어 폭력(욕설과 폭언 등)	168	11	7	36	59	88	2	135	31	19
학교폭력(금품갈취, 폭행 등)	26	116	27	51	78	30	10	126	18	25
따돌림	7	59	4	35	19	15	1	54	7	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11	8	14	10	13	6	4	27	4	2
학습에 관한 권리 (수업배제행사참여 강요)	27	3	11	6	13	20	2	24	12	5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28	0	1	1	1	26	0	21	7	0
휴식권 박탈 (쉬는시간, 점심시간 제한)	1	0	0	0	0	1	0	0	1	0
개성실현(복장, 두발 등)	46	2	4	6	13	32	0	39	10	2
사생활의 비밀/자유(휴대폰 등)	64	5	11	16	18	41	5	50	18	12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10	1	0	1	4	6	0	5	4	2
자치활동, 참여권	3	0	1	1	2	1	0	3	0	1
부당징계 (학교폭력 처리절차 문의 포함)	196	18	123	41	160	123	12	268	32	36
기타	48	17	78	43	57	25	18	98	15	30
합 계	833	243	292	280	515	512	57	1010	196	158
비율(%)	60.9	17.8	21.3	20.5	37.8	37.5	4.2	74.0	14.4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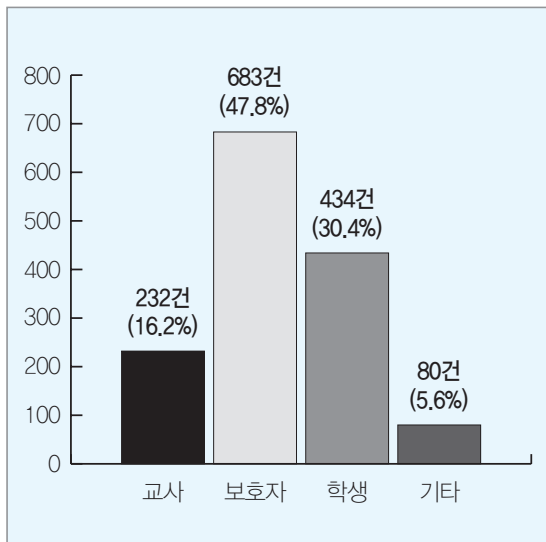
※ 위 통계는 인권상담의 침해유형을 중복 분석한 자료임

- 가해자, 내담자 등의 통계분석은 2012년 2월부터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 침해의 가해자 유형을 보면,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60.9%), 학생 간 인권침해(17.8%), 기타 비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21.3%)'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인권침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인권옹호관제도의 본래 성격적 측면과 내담자가 학생 및 학부모라는 측면, 그리고 학교 내에서 여전히 학생과 교사 간 권위적 관계설정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 내담자의 학교급별 비율을 보면, '중학생(37.8%), 고등학생(37.5%), 초등학생(20.5%), 기타 유치원생이나 비학생(4.2%)'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의사표명 능력이 높다는 점과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 내 인권적 제한이 증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의 설립형태로 보면, 국공립학교(74.0%), 사립학교(14.4%), 기타 불분명한 상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 학교 수 대비 국공립의 학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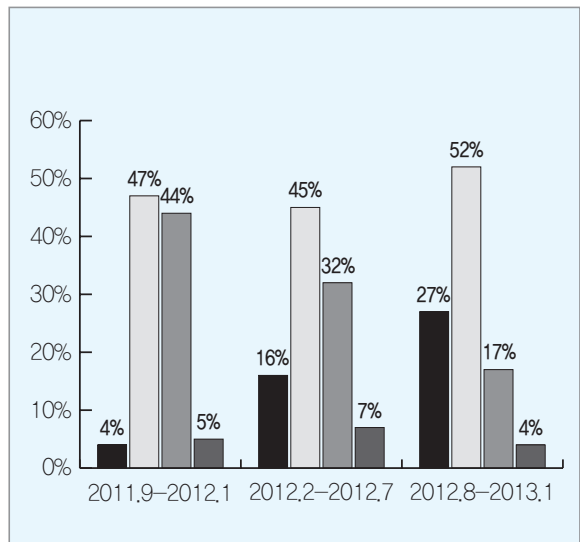
3) 내담자 유형별 상담 분석 및 변화 추이 분석(2011.9.1. ~ 2013.1.31.)

구분	내담자				합계
	교사	보호자	학생	기타	
2011.9 - 2012.1	16	174	165	19	374
2012.2 - 2012.7	96	277	193	45	611
2012.8 - 2013.1	120	232	76	16	444
합계	232	683	434	80	1,429
비율(%)	16.2	47.8	30.4	5.6	100.0

※ 상기 내담자 유형별 상담분석 통계자료는 전체상담 건수 중 유의미한 상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한 자료임 (각종 안내상담 건수 제외 자료)



〈전체 상담 중 내담자 유형별 비율〉



〈내담자 유형별 상담건수 변화 추이〉

-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인권상담을 진행한 내담자의 유형은 학생의 보호자(47.8%) > 학생(30.4%) > 학교 관리자 및 교사(16.2%) > 기타 또는 관계 불명 등(5.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담자의 유형 중 학생이 아닌 보호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1차적으로 보호자와 상의하면, 이를 토대로 보호자들이 학생을 대신하여 인권상담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직접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 개시 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사후구제적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교사와 학교관리자에 의한 인권상담이 급속도로 증가(4%⇒ 16%⇒ 27%)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옹호관제도의 홍보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현상은 학생인권옹호관제도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사후구제 중심의 상담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상담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3.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조치 통계 분석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 현황(2011.9.1. ~ 2013.1.31.)

구분	조사 (건)	구제 (건)	구제조치 내용				
			인권침해/ 차별행위 중지	재발방지 대책마련	원상회복/ 손해배상	인권교육 수강 /징계 요구	합의조정 등 현장해결
차별	26	24	15	10	0	2	18
체벌	117	119	77	95	5	24	76
언어적 폭력	54	59	28	42	3	14	35
학교폭력(폭행, 갈취 등)	42	35	23	17	0	6	26
따돌림	13	11	8	9	0	0	10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6	5	3	3	0	5	4
학습에 관한 권리	20	22	11	9	1	1	12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22	21	21	14	0	0	9
개성실현(복장, 두발 등)	34	31	25	19	1	1	13
사생활의 비밀/자유	35	36	24	22	0	1	23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6	5	4	4	1	0	3
자치활동, 참여권	2	2	2	1	0	0	2
부당징계	56	39	16	21	1	0	24
기타	32	29	4	11	0	0	25
합계	465	438	261	277	12	54	280
구제조치 유형별 비율(%)			30	31	1	6	32

※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유형별 분석은 조사대상 쟁점별 내용을 중복 분석한 자료임

- 학생인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조치 내용의 비율을 보면, '합의조정 등 현장해결(32%) >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31%)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30%) > 인권교육 수강 및 징계 권고(6%) > 기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권고(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조치 보다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를 요구하는 컨설팅 형태의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 학생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권옹호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로 100%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교육과 관련 행정에 인권적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2-4.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활동 현황

구분	연수대상			합계
	교사 연수	학생 연수	기타	
합계	121	60	30	211
비율(%)	57	28	14	100

-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총 211회의 인권교육을 지원하여 인권조례 제정의 본래 의미의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지도에 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또한, 학교 내 소수자인 장애학생이나 학생운동선수 등의 인권 보호 방안과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방안에 대한 교육을 특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의식을 증진하여, 인권침해 사안 발생 후의 사후적 구제조치 보다는 사전예방 활동 중심으로 인권보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Ⅱ. 학생인권상담 사례 구성 개요





▶ **인권조례의 학생권리장전에 따른 권리영역별 분류**

- 인권조례 제5조부터 제27조의 학생권리장전에 근거하여 학생의 권리영역을 다음과 같이 10개 영역으로 우선 분류하고, 최근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특별사례 영역으로 분류하여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②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③ 교육에 관한 권리
- ④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⑤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
- ⑥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⑦ 복지에 관한 권리
- ⑧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⑨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⑩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⑪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권리영역별 학생인권상담 대표사례 선정**

- 학생인권옹호관이 본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1년 9월 이후 접수된 총 1,429건의 학생인권상담 사례를 권리영역별로 분류한 후, 영역별 학생인권을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관련사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별 판단과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조치 제시**

-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학생인권의 의미나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한 보호 내용을 설명하고, 인권침해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치한 시정권고의 내용도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 **대표사례와 관련된 국내외 규범 등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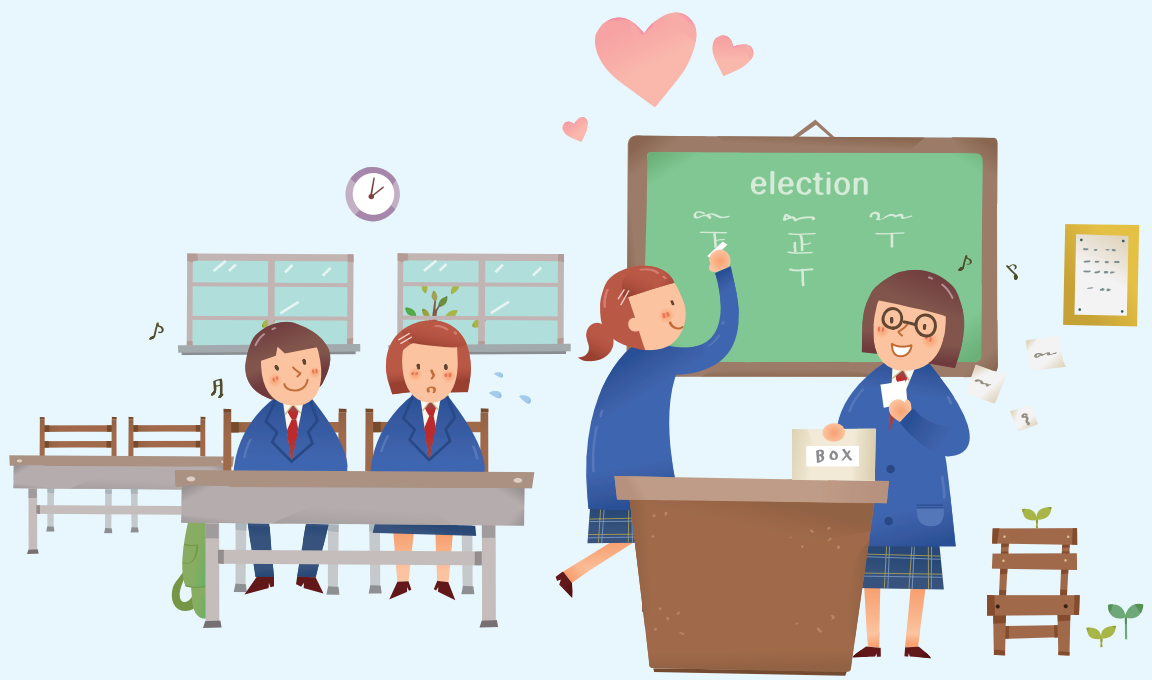
- 권리영역별로 선정된 대표사례의 의미와 권리내용을 설명하는데 근거가 되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국내 법률을 필요한 부분마다 간략히 제시하였습니다.  
- 대표사례나 관련사례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의 학생설문 결과 제시**

- 각급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실시된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중 학생설문 결과를 주요 권리영역에 제시하였습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지도 방안의 예시**

- '체벌금지'와 같이 현행 교육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교사나 학교에 관행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일방적, 권위주의적 학생지도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 사례집에서 제시하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방안의 예시안은 학교 내 학생지도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헌법과 관련 법률,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1. 성별에 의한 차별
- 1-2. 성적에 의한 차별
- 1-3.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
- 1-4.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 1-5. 징계를 이유로 한 차별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1-1. 성별에 의한 차별

### (사례) 나도 의사 역할을 맡고 싶어요.

우리 반에서 직업에 관한 역할극을 하는데 선생님이 여학생에게는 간호사 역할만 맡기고, 의사역할은 남학생만 시켜요. 나도 의사역할을 하고 싶는데, 여학생은 의사역할을 할 수 없나요?

### (조치 및 판단) 남녀차별이 아니라 남녀차이를 이해해 주세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교육방식은 차별행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전통적 사고에 기반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역할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남녀차별 의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 간의 고정적 성역할만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의 성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역할극에서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초등학교 출석부상 번호 부여 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05.9.28. 결정)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대략 30번부터 부여하는 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이다.

## 1-2. 성적(成績)에 의한 차별

### (사례) 최신식 시설이 갖춰진 정독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차지예요.

우리 학교는 최근 많은 예산을 들여 냉난방도 되고 지도교사도 있는 최신식 정독실을 만들었어요. 저도 집중이 잘되는 책상에서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지만, 정독실은 1등에서 50등까지의 성적우수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군요. 성적은 최고는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는데, 성적에 밀려 추운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려니 벌써부터 사기가 꺾입니다.

### (판단 및 조치) 성적이 정독실 이용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입시경쟁위주의 교육문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를 논외로 하되, 학교가 운영하는 정독실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에게 이용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산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모든 학생에게 정독실의 이용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일정한 이용 자격 기준을 두어 정독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용 자격 기준이 유일하게 성적이라면, 이는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정독실 이용 자격 기준을 '최근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으로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 중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해당학교에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행복도 성적순? 장학금마저 성적순인가요?

우리 학교는 성적우수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요. 본래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장학금의 성격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적에 의한 학급 회장 자격 제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06.11.28 결정)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량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에 학급 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 성적우수자반 운영에 의한 학생인권 및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0.02.21. 결정)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반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성적에 의한 정독실 자격 제한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08.01.28. 결정)

- 피진정인이 교내 정독실 입실자격을 특정 성적우수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공교육 서비스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수용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 1-3.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

#### (사례) 한부모가정에게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래요.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저는 수년 전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학교 배정에 필요하다는 좋은 학군으로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부모가정의 원인(이혼, 별거, 사별 등)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초등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장전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혼 가정의 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판단 및 조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보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인권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해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나 부당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 따라 남에게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모든 사적 영역은 누구든지 그 비밀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시기에는 가족 관련 개인정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육환경만을 찾는 부당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만 추가로 그 가족상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은 한부모가정의 가족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1-4.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 (사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학교에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내내 수학반 반장을 맡아 왔는데, 이번 학기에는 수학반 지도교사가 다른 학생들의 고른 지지도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아이에게 수학반 반장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친구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사회적 배려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 (판단 및 조치)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수학반 지도교사가 정말로 내담자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 특별전형자라는 이유로 수학반 반장의 소임을 맡기지 않았다면, 인권조례 제5조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5. 징계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벌점 누적으로 인한 교내봉사 징계 기록 때문에 반장이 될 수 없대요.**

성격도 활달하고 고민도 잘 들어줘서 그런지 친구들이 저를 새 학기 반장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지난 학기 교내봉사 징계 기록 때문에 제가 반장에 입후보할 자격조차 없다고 합니다. 지난 학기 초 몇 번의 지각과 실내화 미착용 등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면서 교내봉사 선도처분을 받았지만, 이후로 정말 성실히 학교생활을 했는데, 큰 잘못도 아니고 이런 징계기록 때문에 학급 반장 후보 자격도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판단과 조치)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대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입니다.**

징계의 이유와 내용, 징계의 경중과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학생대표 선거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거나 학생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인권조례 제5조에서 금지하는 '징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이기에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종전에 받은 징계사실이 현재 학생의 모든 품행을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학생을 대표하기 위한 리더십이 도덕성과 항상 연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사례 1) 경미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같은 반 아이들의 지지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치러진 새학기 선거에서 반장을 선출되었지만, 선생님은 제가 1학기에 벌점 누적으로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반장 자격을 박탈하셨어요. 지각 때문에 오래전 받은 징계를 이유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반장자격을 이렇게 박탈해도 되나요?

**(관련사례 2) 징계 경력자는 학급대표로서 활동한 공로를 표창할 수 없나요?**

중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는 관행 상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학생대표들에게 학년말 공로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 학생대표 중 1학기에 경미한 교칙 위반으로 교내봉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 교내 상훈규정에 따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가 해당학생에 대한 차별인가요?

**인권보호, 이렇게 해 봅시다.**

**학생대표 자격제한 관련 교칙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해 봅시다.**

▷ 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과 자격 박탈 등의 자격 제한 규정을 교칙에 명시합니다.

- 학생대표는 다른 학생과 학교를 대표하므로 일정한 정도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적이나 징계 받은 사실 등만으로 학생대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의 징계사유와 징계 내용이 학생대표의 자격을 제한하는 목적이나 이유와 학생 징계 내용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제한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차별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칙에 학생대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징계사유(예: 흡연 2회 이상으로 징계를 받은 자,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등)와 징계를 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등에 대해서 대표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이러한 자격제한 규정은 행위와 책임의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도한 자격 제한 규정은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2-1. 체벌금지
- 2-2. 간접체벌
- 2-3. 체벌금지와 위기학생 지도
- 2-4. 언어폭력
- 2-5. 성희롱
- 2-6. 학교 내 안전사고

###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2-1. 체벌금지

### (사례) 잘못은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맞는 건 너무 창피해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담당선생님이 제 머리를 때리시고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다음 '바보 같은 ××'라고 아이들 앞에서 욕까지 하셨어요. 제가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얻어맞고 바보 취급 받는 건 창피해서 죽기보다 싫었어요.

### (판단 및 조치)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은 조례 이전부터 금지되어 왔습니다.

체벌은 인권조례 위반을 넘어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1996년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해 학교 내 체벌을 법률과 교칙에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과 언어폭력을 학생지도의 한 방편으로 합리화하는 일부 교육계의 관행은 규범에 따라 엄격히 평가되고 시정 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교사와 학교장에게 엄중 경고 후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연수를 실시할 것, 교사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1)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체육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다가 선생님에게 들켜 생활지도실에 끌려가 몽둥이로 엉덩이를 셀 수 없이 맞았어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때리셨고 아파서 몸을 바닥에 나뒹굴자 발로 허리를 밟으셨어요.

### (관련사례 2)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세요!

중학교 학생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화가 나시면 학생을 아무도 없는 학교 창고로 끌고 가서서 훈계를 넘어 듣기 힘든 욕설을 하십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시면 손에 잡히는 물건을 우리 쪽으로 마구 집어 던지십니다.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너무 두려웠습니다.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학교 내 체벌 경험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있다(4-2번에도 답변)	없다(5번으로 이동)
초등학교	3.93	96.07
중학교	9.85	90.15
일반고 고교	5.03	94.97
특성화 고교	6.90	93.10
계	6.43	93.57

-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93.6% 이상이 체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체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6.4%나 된다.

▷ 학교 내 체벌의 비인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할 것(2002년)
- 교사의 학생체벌과 욕설은 인격권 침해(2010년)
- 간접체벌을 허용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내용은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어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2011년)

○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7. 6. 2.자 보고서)

-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효과적인 생활지도 수단이 아니며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한다."고 권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05헌마1189)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고,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1차 권고 (1996년)】

d)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권고 22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2차 권고 (2003년)】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마찬가지로의 견해를 보라, E/C.12/1/Add.79,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3차 권고 (2011년)】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 돌봄 학교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 사항 (CRC/C/15/Add.197,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 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2-2. 간접체벌

### (사례) 벌을 서고 있는 친구가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제 친구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이 교실 앞으로 불러내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20분 이상 시켰어요. 수업은 진행되고 친구는 계속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한참 후에 땀을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친구가 정말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벌을 오래 세우는 것도 인권침해 아닌가요?

### (조치내용) 간접체벌이 훨씬 더 비교육적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체벌입니다. 선생님이 도구나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체벌한 것이 아니지만, 사례와 같은 체벌은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학생의 의사를 지배하여 학생 스스로를 체벌 도구화하였다는 점에서 직접 체벌과 동일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에 대한 강압적 의사지배를 통한 체벌이 때로는 교사가 직접 학생을 체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육적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예: 두 명의 학생을 마주보게 하고 상호간 뺨을 때리게 하는 행위)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교사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1)

저는 학급 반장입니다. 체육선생님이 체육시간 시작 직후 학생들이 줄을 맞춰 서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된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 반 학생들의 정신상태를 뜯어 고치겠다며 오리걸음, 팔벌려 제자리 뛰기, 어깨 걸치고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결국 한 친구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이 체력단련프로그램이지 사실 단체기합이었다고 생각해요.

### (관련사례 2)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방과 후 복도청소를 일주일 째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1학년 학생이 들기도 힘겨운 대걸레를 직접 빨고 물을 짜게 한 다음에야 청소를 시키는 바람에 아이가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 (관련사례 3)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담임선생님은 숙제를 다 해오지 않은 경우, 수업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수업시간에 떠든 경우에 교과서를 들고 교실 뒤에 서서 수업 받게 하십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뒤에 서서 수업을 받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 간접체벌의 비인권성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1.3.3. 결정)

- 교육부가 간접체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직접 또는 간접체벌의 경계마저 모호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간접체벌의 내용을 시행령에 입법위임하는 것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간접체벌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지닌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

## 간접체벌과 인권친화적 학생지도(체력단련프로그램)의 차이

▷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은 최소한 학교장의 지침으로 사전에 공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를 이해시키고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지도가 필요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절차가 아닌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한 훈육 프로그램의 운용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업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야기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상황을 예상하여 교칙 또는 학교장의 지침으로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렇게 사전에 공지된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체력단련프로그램이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간접체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로서의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 단, 이러한 지침에 따른 인권친화적 학생지도(체력단련 프로그램)라고 할지라도 학생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3. 체벌금지와 위기학생 지도

### (사례) 체벌을 금지하는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만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인해 학생지도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인정하는 인권조례의 제정이 시기상조는 아니었는지 우려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 (판단 및 조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보고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자랑스러운 자치규범입니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는 2010년 9월 제정된 인권조례에 의해 처음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1997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의해 이미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국내 법률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보장기구의 결정과 권고 내용을 토대로 학교 내 보장되어야 할 학생인권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있을 뿐 어떠한 내용도 새로운 인권규범으로 창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규범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조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동인권 보호의 우수사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한 자랑스러운 자치규범입니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창설적 규범이 아닌 확인적 규범이며, 학생 권리의 보장과 함께 책임의 이행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는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을 모든 학교생활영역에서 상시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 보장만큼이나 학교 공동체에 대한 학생의 책임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학생인권조례를 꼼꼼히 읽고,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학교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되고 이행되어야 합리적인 것인지를 연구하고, 학생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적정한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엄격히 지도하여 학교 공동체 내에서 학생의 책임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 교사의 부당한 체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05헌마1189)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다.
-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은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 벌 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및 학생지도능력을 강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인 것이다.
-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불손한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는 예가 있음을 들어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는 등으로 대처하여 교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교사나 다른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체벌 대상 학생에 대한 신체적 위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의 법리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체벌로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종래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터 잡아 교사의 권위를 그릇된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다. 교사의 참된 권위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격의 주체로 대하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지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인권보호, 이렇게 해 봅시다.

교칙에 명시된 학생 권리와 책임을 교실에 게시해 봅시다.

-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언(法諺)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합의의 정당성이 인식되고, 그 규범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도 인식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교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반감을 나타내며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에게는 학교 공동체의 합의된 규범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자의적인 학생지도를 지양할 수 있도록 교실과 복도에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칙을 게시하여 봅시다.

▷ 교실 안 게시판

- 휴대전화 사용 및 수업태도 불량 등에 대한 지도 규정, 교사의 학생지도권 일반에 관한 사항 등 교실 생활과 관련된 생활인권규정을 게시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학생지도권 발동의 근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교권의 정당한 행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지도해 봅시다.

▷ 복도 등 교실 외 학교시설

- 흡연금지과 흡연학생에 책임 규정, 소지품 검사 절차와 책임, 실내화 착용 의무와 책임 등 학교시설 내 일반적 생활인권규정에 관한 내용과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해 게시해 봅시다.

## 인권, 알아야 힘이 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에게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르치고자 합니다.

▶ 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조합니다.

-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은 소중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규범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4조 제3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 제3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학습자의 의무 조항을 거듭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책무와 의무】

- 1) 인권에 대한 학습 의무
-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
- 3)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4)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내질서를 존중할 의무
- 5) 교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존중할 의무

-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인권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출발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적법한 학생지도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학생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구성원 간 합의된 규범을 정당한 이유없이 무시하는 행위', '적법절차에 따른 교사의 지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선생님들은 학생의 올바른 권리의식 함양을 위해 권리의 보장에 비례하여 그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배우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규범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인권, 알아야 힘이 됩니다!**

## 선생님은 일차적 인권옹호관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재적 인권침해자가 아닌 일차적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인권조례는 교사의 권한을 학생인권과 충돌하거나 침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1차적 옹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소극적으로는 교사에게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공동체 합의 규범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교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학생을 지도하고 징계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인권조례 중 적법절차에 의한 학생지도권 관련 규정】

- 아래 예시 조항 외에도 타인권리 보호, 공동체 질서 유지 등의 공익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권리는 제한할 수 있음(제3조 제2항)
  - 1) 절차에 따른 개성실현 권리 제한 관련(제11조 제3항)
  - 2) 절차에 따른 소지품 검사 및 휴대전화 규제(제12조 제2항, 제4항)
  - 3) 적법절차에 따른 학생개인정보의 수집, 관리(제13조 제3항)
  - 4) 절차에 따른 학생지도 및 징계(제25조) 등

## 인권조례는 상위법에 반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규범인가요?

### ▶ 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인권조례가 상위법에 반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무리한 규범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 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최초의 인권규범입니다.
- 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법률과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되지 않은 어떠한 내용도 새로이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 단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장이 존중해야 할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국내외 인권규범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 ▶ 인권조례는 유엔인권이사회에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 우리 정부는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인권상황보고서’에서 우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필두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를 국내 아동인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 자랑하고자 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아동인권 보호 규범인 것입니다.

〈경향신문, 2012. 10. 22. 기사〉

### 정부, 학생인권조례 막고는 UN엔 조례 자랑

· 국내외 ‘이중 플레이’ 도마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한국인권상황보고서에 “지방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가 안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으면서 밖으로는 인권증진 사례로 자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경향신문은 22일 외교통상부가 이달 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 9쪽 ‘학생들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 항목에는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도 없다. 다수의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들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례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돼 있다.

####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Students (Recommendation 6 and 9)

37. Committed to guarantee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make sure the freedom is enjoyed in a peaceful and legitimate manner, without threatening public order or the safety of citizens. Outdoor assemblies at night were formerly be prohibited by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but the provision was ruled as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ptember 2009.<sup>10</sup> The provision subsequently became invalid at the end of June 2010.
38. No legislations specifically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assembly of students, but they are not restricted by any law either. A number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have formulated students' rights ordinances,<sup>11</sup> all of which stipulate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students shall be guaranteed. Some ordinances also ensure freedom of assembly as well.

## 2-4. 언어폭력

### (사례) 선생님이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욕을 하시는 것이 너무 싫어요.

수업 중 즐거나 탄 것을 하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생님께서 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더니, “쓸모없는 ××”,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니?” 등의 말로 창피를 주셨어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피곤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저의 잘못은 알겠지만, 같은 반에 여자 친구도 있는데, 반 아이들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부모님까지 욕되게 해서 정말 싫었어요.

### (판단 및 조치) 학생도 엄연한 인격권의 주체입니다.

수업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을 교칙의 절차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권이나 학생지도권의 정당한 행사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학생지도는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엄연한 인격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생들 앞에서 인권친화적 언어사용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학생지도를 벗어난 인권침해적 행위입니다. 게다가 수업시간 등 공개장소에서 공연히 행사된 언어적 모욕은 인권적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보다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인권침해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사에 의한 언어적 모욕 등 인격권 침해행위를 신체적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만큼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관련사례 1) 저는 쓸모없는 놈이 아닙니다 ㅠㅠ.

중간고사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후, “이 녀석들이 우리 반 평균을 깎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어요.

### (관련사례 2) 선생님, 별명 말고 예쁜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중학교 여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좀 똥똥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선생님 중 한 분이 아이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닌 ‘똥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신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때마다 상처를 받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같은 반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똥보라고 놀리면 어찌지?”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 ▷ 교사의 언어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제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 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2010.11.29. 결정)
2.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쿵쿵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 바...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10진정 313700 결정)

## 2-5. 성희롱

### (사례) 다정한 스킨십이 아니었어요.

감기 몸살로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없어 수업 시작 바로 전에 교과 담당선생님께 보건실에 가려고 허락을 구했는데, 선생님께서 제 손과 팔을 품으로 잡아당겨 안으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면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간신히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긴 했지만, 지켜보던 남학생들이 웃으며 속닥거리는 것 같아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다음날부터는 그 선생님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 등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 (판단 및 조치) ‘성적수치심’은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우선 판단됩니다.

학생들은 신체적·정서적 성장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관계형성(Rapport)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지라도 행위자 중심의 시선과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대방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의도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행위자의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행정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을 권고하고, 해당 교사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1) 여학생의 교복치마 길이를 검사한다며 휴대전화로 다리를 촬영했어요.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입니다. 생활인권부 선생님이 교복치마 길이가 짧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 한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복치마와 다리를 촬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선생님이 제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이 불쾌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싫었어요.

### (관련사례 2)

저는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우리 학교 생활인권부 선생님들은 가끔 금연지도를 이유로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여다보십니다. 한 번은 교복치마를 추스르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여다보시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여자 선생님도 아니고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을 열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 성희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영국의 노터치(No-touch) 정책

영국은 학생 성추행 등 불필요한 오해로 교사들이 소송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8년 교사와 학생 간 신체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노터치(No-touch)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영국 교사들은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어 악기를 가르치거나 칭찬을 할 때조차도 팔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서로 심하게 몸싸움을 벌여도 교사들이 이를 말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영국 교육부는 “수업방해로 퇴실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강제로 쫓아내야 할 경우, 여행이나 답사 등 학교 행사를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해야 할 경우,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려야 할 경우, 교사나 동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경우 등에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할 수 있다”고 노터치 정책의 일부를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일부 수정은 영국의 엄격한 체벌금지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영국이 체벌금지 정책을 폐기했다.”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영국 교육부는 현재까지도 “물리력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어느 때나 항상 불법(unlawful)”이라고 명시하여 엄격한 체벌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Schools cannot:**

- use force as a punishment - it is always unlawful to use force as a punishment.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침에는 '물리력을 체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출처는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www.education.gov.uk)

## 2-6. 학교 내 안전사고

### (사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초등학교 인권부장교사입니다. 정규수업이 다 끝나고 2시간이 지난 후에 운동장에서 놀던 4학년 학생이 축구를 하던 6학년 학생들의 공에 맞아 얼굴과 눈에 상처가 났습니다. 4학년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6학년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학교폭력 사안인가요? 학교 안전사고라면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판단 및 조치)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나 학교장에게 관리·감독의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교육자적 입장에서의 윤리적 지원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중 '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고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상급생들이 하급생을 괴롭힐 목적이 없이, 축구게임 중에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또는 그와 관련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학생들이 운동장에 남아 있던 시간은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이나 학교안전사고로 처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기타 법률상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축구게임 중 과실로 4학년 학생을 다치게 한 6학년 학생들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실책임)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가 가·피해 학생 간의 화해와 보호자 간 손해배상(치료비 등)의 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이나 중재의 노력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조(정의)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3장 목차 속지〉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3. 교육에 관한 권리

- 3-1. 수업배제
- 3-2. 교내 행사 참여 강요
- 3-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 3-4. 야간자율학습 강제
- 3-5. 휴식권 박탈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3-1. 수업배제

### (사례) 학생이 잘못을 했어도 수업은 들어가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흡연 등 교칙 위반 행위를 이유로 아침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인권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니다. 아이의 잘못을 알지만, 중간고사를 앞두고 한 두 시간도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조치 아닌가요?

### (판단 및 조치) 원칙상 수업시간 외에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을 이해시키고, 긴급하게 선дона 교육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학생을 상담실이나 학생지도실 등 별도의 공간에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수업 외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즉시 조사하는 것이 선도와 교육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며, 조사를 위한 다른 시간적, 방법적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학생 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배제시키고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사의 긴급성과 대체불가능성 등의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학교장의 결재가 없다면 수업권 배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한 학교장의 결재에 근거한 수업배제 조사라 할지라도, 조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다른 시간과 방법으로의 조사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사안이 수업을 배제한 채 장시간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사 직전 인권부장이 학교장에게 구두 보고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결재문서도 확인할 수 없었기에, 학교 측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학생지도나 조사를 위해 수업배제가 필요한 경우의 조치 사항

### 1) 수업을 배제하고 조사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가?

- 가) 조사 대상 사안의 규모를 고려할 것
  - 교칙 위반사안의 복잡성이나 중대성
  - 관련 학생이 여러 명인가의 여부
- 나) 조사 시간과 방법의 긴급성을 고려할 것
  - 쉬는 시간·점심시간·방과 후 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의 여부
  - 대면조사가 장시간 필요한 사안인가의 여부

### 2) 적절한 수업배제 조사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은?

- 가) 학생지도(또는 학생선도 조사) 계획 문서의 작성
  - ① 학생조사의 목적 ② 수업배제 상태에서의 조사 필요성 및 긴급성 ③ 조사일정과 방법
  - ④ 향후 조치계획(수업배제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 방법 포함) 등을 간단히 언급한 문서를 작성
- 나) 학교장의 사전 결재(또는 사후 승인결재)
  - 위 문서를 학교장 사전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승인 결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3) 수업시간 중 조사의 적절한 범위와 추가조치

- 가) 최소 시간 조사
  - 가능한 한 신속한 조사로 수업배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업배제를 통한 조사가 학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연속적으로 수업시간을 배제하기 보다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 스스로 선택한 시간에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추가조치
  - 보호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통지
  - 수업결손 보충 요청이 있는 경우 대안 제시

## 3-2. 교내 행사 참여 강요

### (사례) 방과 후 교내 음악회에 참석하래요!

교장선생님이 방과 후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내 음악회에 모든 학생이 참석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몸이 아파 담임선생님에게 조퇴를 받아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은 마음에도 없는 음악회에 억지로 참석해야 했어요.

### (판단 및 조치) 학생들이 더 많은 문화 활동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임의적으로 교내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주장처럼 학교장이 음악회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적극적 참여를 권고한 바는 있었으나, 내담자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음악회 개최 목적과 참여 요구 이유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음악회 진행 시간 역시 평상시 방과 후 학교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학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학생들의 주택가 내 흡연이나 소란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과 마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행사의 일환이자,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정기적 문화행사라는 점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던 사례입니다.



### 3-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 (사례) 편의점 사장님이 지각비를 이유로 월급을 깎아 버렸어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편의점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분 정도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벌금을 매겨 이를 제하고 월급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받은 월급은 본래 지급 받아야 할 돈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본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치 및 판단) 학생들의 소중한 땀의 결실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각이나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본래 근무해야 할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이행 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처럼 본래 근로계약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지각을 이유로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한 경우이므로, 부당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체불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교육 받지도,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유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거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의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는 현장실습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차별 관련 학생설문 결과

자주 있다	한두 번 있다	전혀 없다	무응답
4.17	16.37	62.37	17.10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에서 차별이나 노동권을 침해 받은 경험은 ‘그렇지 않다’ 62.4%, ‘한두 번 있다’ 16.4%, ‘자주 있다’ 4.2%, ‘무응답’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20.5%가 노동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음을 응답한 결과를 보면, 산업체의 근무조건 및 업태,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 교육에서 노동권이 보호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긴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당대우 구제 조치 방법

-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체불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진정 등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학생들에게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형식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교육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구제기관에 알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부당대우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장의 ①주소, ②연락처, ③대표자 이름을 꼭 알아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는 반드시 기록해 둘 것을 교육합니다.
- 특히, 장기간 노동은 물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등 실제 일한 시간과 근무 중 발생한 사실, 사고 등 해당 일시와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노동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설령 본인 실수로 다쳤다 해도 가능(무과실책임제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특성화고교 학생의 현장 실습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임을 안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 학기 초 학생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고용노동부를 통한 인터넷 구제신청

-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민원마당→사이버신고센터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알바 Talk',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1388)

- 24시간 사이버 및 모바일 문자로 노동인권 문제 상담 실시

### ▷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시

- 여성긴급전화(1366) 나 청소년전화(1388) 을 통해 상담 및 구제신청 가능

### ▷ 노동재해(산업재해)의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보통 병원 원무과 통해서 제출

### 3-4. 야간자율학습 강제

#### (사례) 야간자율학습에서 빠지려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아 오세요!

저는 공부보다는 제빵 기술에 관심이 많은 고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빵학원에 가고 싶지만, 학교에선 부모님의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확인서가 없는 경우 무조건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는 밤 9시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시지 제빵 기술을 익히는 것에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계속 무의미하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나요?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만 되는데 걱정입니다.

#### (판단 및 조치)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되, 학생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 역시 학교 교육의 한 주체이므로 학교 내 학생의 교육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에 대해 보호자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의 참여 여부'는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학교에서 보호자의 의견만 채택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생활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의견은 무조건 배제하는 경우라면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과목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례 제17조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학생의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되, 스스로 의견을 형성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내담학생의 담임교사와 논의하여 학생의 현재 학업성취도 수준, 향후 진로에 대한 학생의 의사와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면담 후 학생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2. 결정)**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중학교	14.15	16.17	27.48	5.07	6.48	30.65
일반고 고교	32.05	30.12	21.65	8.78	6.29	1.10
특성화 고교	27.04	27.98	25.91	7.42	7.72	3.92
계	24.41	24.76	25.01	7.09	6.83	11.89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49.2% 정도의 학생만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제한 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와 지도가 요구된다.

### 3-5. 휴식권 박탈

#### (사례)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서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은 수업 진도를 이유로 수업 종료 종이 울린 이후에도 계속 수업을 진행해서 쉬는 시간을 5분도 주지 않거나 아예 두 시간 수업 진행 후 10분 간 쉬는 시간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힘들어 합니다.

#### (판단 및 조치) 쉬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라면 인권조례 제10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학생들에게 수업 간 보장된 쉬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등 신체적·정신적 휴식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관련사례1) 너무 이른 등교도 학생의 휴식권(수면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학교는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합니다. 인근의 고등학교는 8시나 8시 10분인데 우리 학교만 너무 일찍 등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아침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 (관련사례2) 너무 많은 과제물도 학생 인권침해 아닌가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은 전날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방과 후에 남아서 과제를 다 할 때까지 아이들을 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로 우리 아이는 오후 5시가 다 돼서 집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아이의 경우 집에서 두 시간 이상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제물로 힘들어 하며 점점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를 보면 안쓰럽고 속이 상합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3차 권고 (2011년)】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쉬는 시간 보장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42.47	30.96	18.89	5.51	2.17
중학교	23.52	36.58	29.72	7.25	2.92
일반고 고교	22.35	41.04	28.23	6.29	2.09
특성화 고교	25.51	39.87	27.28	5.11	2.23
계	28.46	37.11	26.03	6.04	2.35

65.6%의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이 지켜지고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8.4%이다. 이는 비교적 학교에서 수업권이나 휴식권이 지켜진다고 해석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휴식권이 일부 교사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바, 적절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4-1. 두발 제한
- 4-2. 교복 변형
- 4-3. 소지품 검사 강제
- 4-4. 일기장 검사
- 4-5. 휴대전화 압수
- 4-6. 수업 촬영
- 4-7. 교복 부착형 명찰
- 4-8. 학생정보 수집 절차
- 4-9. 학생 개인정보 누설
- 4-10. 학교예산 관련 정보의 공개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2조(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4-1. 두발 제한

### (사례) 길지도 않은 머리를 다시 잘라야 하나요?

인권부장 선생님께 두발의 길이가 길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어요. 내일까지 머리를 깎지 않으면 다시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말이죠.

### (판단 및 조치) 학생의 두발 문제는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2005년 7월 이후 계속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1조 제2항은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두발 길이만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학생의 두발 길이가 너무 길거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도가 필요하다면 강제적 조치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발 길이 규제 외에 염색이나 퍼머 등 학생 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변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활인권규정을 통해 일정한 절차와 요건 아래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두발 자유 관련 정책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5. 7. 4. 결정)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현행의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를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의 개선을 권고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두발길이 단속 관련 학생설문 결과(\*초등학생은 제외)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무응답
중학교	33.89	28.90	22.84	5.30	4.87	4.25
일반고 고교	42.69	32.0	17.18	3.55	3.12	1.46
특성화 고교	33.92	28.82	22.26	6.05	6.51	2.45
계	36.83	29.91	20.76	4.97	4.83	2.72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길이에 대한 단속에 대해 66.7% 이상이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두발 및 복장단속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9.8%이상이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생활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두발 단속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음을 보여준다.



## 4-2. 교복 변형

### (사례) 저는 잘못도 없는데 수업 중 복장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교과 과목 수업 중에 생활인권부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모든 학생들의 교복 모양을 검사하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복을 변형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업이 중단된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학생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욱 이상했어요.

### (판단 및 조치) 학생지도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문이나 현관, 심지어 교실에서 일괄적인 학생지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복 미착용 등교, 교복 모양이나 머리모양의 심각한 변형, 실내화 미착용, 지각이나 무단이탈 등 학교 교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여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업 분위기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문제로 비롯되는 교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학생들마저 잠재적 교칙 위반자로 취급하는 일괄단속이나 집중지도는 행정편의주의적 행위이자 권위주의적 행태이며, 인권적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 내 학생지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형사법에서는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개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도 연습되고 몸에 익혀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기에, 집단적이거나 일괄적 단속 형태의 학생지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 (관련사례 1) 교문에서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아요.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침 등교 시간에 지각, 교복 미착용, 실내화 등교, 머리 모양 등의 지도를 이유로 학생들이 10명씩 줄의 지어 검사를 받아야만 교문을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가 학생이냐 건달이냐.,” “부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보냈냐.” 등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 (관련사례 2) 여학생의 교복치마 길이를 검사한다며 휴대전화로 다리를 촬영했어요.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생활인권부 선생님이 교복치마 길이가 짧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수집을 한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복치마 아래 다리를 촬영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선생님이 제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이 불쾌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싫었어요.

## 4-3. 소지품 검사 강제

### (사례) 설명도 없이 주머니를 뒤지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인권부장 선생님과 마주 했는데, 느닷없이 제 주머니를 뒤지시며 담배와 라이터를 압수해 버리셨어요. 물론 담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화장실 앞에서 주머니를 설명도 없이 막 뒤지시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 (판단 및 조치) 학생지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 내에서 흡연과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라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공개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실시되는 소지품 검사는 성추행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양해야 합니다.(특히, 남성 교사가 여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 도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대상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인권조례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니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처럼 학생이 소지가 금지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담실이나 학생지도실 등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학생의 동의를 받아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이 교칙에 반하는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대상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거부행위만으로도 학생 징계 절차에 회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되, 지속적인 거부의를 표하는 경우 무리하게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시불이행이나 위험물건 검사 불응 등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다른 규정에 따라 선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사례 1) 도난을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절차도 없이 모든 학생의 가방을 검사했어요.

우리 반에서 스마트폰이 분실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선생님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퇴장하게 한 후 모든 학생의 가방을 검사하셨어요. 결국 소지품 검사는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났고요. 절도범은 잡아야겠지만 학생들에게 설명도 없이 가방을 검사하신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저까지 범죄인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 (관련사례 2) 휴대전화 속 흡연사진을 열어보시고, 저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선생님께 압수당했는데, 선생님이 동의도 없이 제 휴대전화 속 카메라 사진 폴더를 열어 보시고, 그 속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에서 장난으로 찍은 흡연 장면을 문제 삼으시며, 저를 선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학교 밖에서라도 담배를 피운 것은 잘못이지만, 동의도 없이 제 휴대전화 속 사진폴더를 열어 보신 것은 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 아닌가요?

## 4-4. 일기장 검사

### (사례) 아직 어리지만 저도 비밀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매주 금요일 일기장 검사를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매주 선생님께 일기장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저만의 비밀 이야기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기장 검사가 필요하다면 일기를 쓰고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내용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판단 및 조치) 어린 학생에게도 지켜주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글쓰기 능력향상과 바른 생활 습관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일기쓰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기장 검사의 경우,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어린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 받아야 하는 인권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초등학교생의 일기장 검사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조례 제12조 제3항에 “교직원 등 학생의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지도나 교육의 방식으로 일기쓰기를 과제로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선생님이 열람하거나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 일기장 검사 금지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 2005.4.7. 결정)

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

글짓기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일기의 본래 의미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 4-5. 휴대전화 압수

**(사례) 수업시간에 들고만 있었는데도 휴대전화를 한 달 동안이나 압수당했어요.**

우리 학교는 수업 전 휴대전화를 수거함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수업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선생님께 적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시더니, 한 달 동안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와 중요한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했으니 너무 걱정입니다.

**(판단 및 조치) 학교 내 휴대전화의 사용과 제한은 반드시 학교 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제16조는 아동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교 교칙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2조 제4항은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수업방해는 물론 학생의 정신 건강문제까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의 사용과 제한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된 학교 교칙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칙에 따르지 않고 선생님의 판단만으로 휴대전화를 한 달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휴대전화 제한의 문제를 넘어서 학생 개인물품의 부당 압수 문제로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 지양해야 할 조치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수업태도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휴대전화의 사용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업 방해 등의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나 과도한 사용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교칙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압수하는 등의 조치는 임시적, 단기간의 조치로만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함을 반드시 교칙이나 학교장의 지침으로 사전에 학생에게 공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사례)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칙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려 합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 등의 문제가 많아지자,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휴대전화 자체의 소지 금지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0.10.29. 결정)

학습 목적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과도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한 사례

## 4-6. 수업 촬영

### (사례)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촬영해서 학생지도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CCTV로 촬영해 놓고, 녹화 내용을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수업태도가 나쁜 학생들을 야단치기는 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선생님의 이러한 지도 방식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에 가지조차 싫어합니다. 수업 내용을 촬영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 (판단 및 조치) 수업 내용의 촬영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설치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규정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교실 내 CCTV의 설치에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담임선생님이 운용한 촬영장비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아니라, 수업 연구용 촬영장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용 촬영장비 역시 본래의 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 공지도 없이 교사가 임의로 수업 내용을 촬영하고, 그 녹화영상을 수업연구가 아닌 학생지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를 주의조치 할 것,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7항에 따라 제정된 ‘학교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수업연구용 촬영 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시행할 것, 전 교직원에게 개인정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학급 구성원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교실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중학교 담임교사입니다. 학급 내에서 도난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회의를 통해 반 전체 학생의 동의를 받아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교실내 CCTV 설치 관련 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2. 2. 결정)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저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되므로 교실내 CCTV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

## 4-7. 교복 부착형 명찰

**(사례) 학교 밖에서 남들이 제 이름을 알게 되거나 함부로 부르는 것이 싫어요.**

우리 학교는 교복에 명찰이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마다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보는 것이 싫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판단 및 조치) 이름은 개인 신상정보 중 가장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 즉 성명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며, 어느 범위까지 혹은 누구에게까지 알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복 위의 고정식 명찰은 원하지 않는 성명권의 노출을 야기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름의 노출로 인해 범죄 피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이후 계속해서 고정식 명찰의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권조례 제13조의 제2항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정명찰보다는 탈부착이 가능토록 하거나 명찰 위치 주머니 위에 덮개 천을 만들어 학교 밖에선 덮개 천을 꺼내 이름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학생의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 **고정식 명찰 부착 강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09.11. 결정)**

○○지역 일부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 4-8. 학생정보 수집 절차

### (사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 제공해도 되나요?

OO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입니다. 학교가 다른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미 수집해 놓은 개인정보를 녹색어머니회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등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로 지원 주체 기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록 다른 목적이었기 하나, 해당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당시 정보의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원이므로 관련 정보를 지원 주관 단체에 제공해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없지 않나요?

### (판단 및 조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의 동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을 별개의 조치로 보고, 각각의 행위와 조치 전에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놓은 정보라도 수집 당시 또는 수집 이후 정보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이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부모 지원 사업이 다소 지체될 우려가 있더라도 관련 정보주체들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학급 내 도난사고의 조사를 위해 절취행의자로 의심이 되는 학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사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나요?

중학교 인권부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생의 제보로 도난사고의 혐의자를 찾았는데, 이 학생들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면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문자를 생활인권부 교사가 조사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4-9. 학생 개인정보 누설

### (사례) 친권자에게는 학생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비밀전학을 온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감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부가 매일 찾아와 딸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과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친권자임이 확인되었는데,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 (판단 및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친권자라일지라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의 양태를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가족에 대한 집요한 추적을 통해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법 제40조 제1항), 지속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가족의 정보를 가해자인 친권자는 물론 모든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학교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권자가 피해가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학교에 찾아와 지속적인 협박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인권보호, 이렇게 해 봅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전학 처리 시 주소지 등 개인정보 비공개 지침

- 1)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
- 2) 가해자에게 전학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장,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할 것
  - (전학 전 학교 · 교육청) 아동의 비밀전학 신청 시부터 전학 학교명 등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아동(학생)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시 피해자와 아동의 연락처가 가해자(주로 아버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전학 간 학교명, 주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아동의 거주지 · 입소 습터, 전화번호 등) 관리 주의
    - \* “전학처리 서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주의표시(기재)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
    - \* 가해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 (제9조제1항 제1호, 제3호)
  - (전학 후 학교 · 교육청) 전학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및 전학 학교명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0. 학교예산 관련 정보의 공개

### (사례) 학교예산이 어떻게 쓰이나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경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궁금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게시된 예·결산 자료가 너무 어렵게 쓰여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 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학교예산 운영에 대해 참여할 권리는 전혀 없나요?

### (판단 및 조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해 주세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며, 「교육기본법」의 취지와 같이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원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역시 학교 구성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학교에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학교 예·결산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학습할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바,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예·결산 내용을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각 지방교육청의 「학교회계규칙」은 법령은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회계를 대내외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령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4조는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예·결산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업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5.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5-1. 학교 내 종교 강요

5-2. 흡연 측정 강제

5-3. 반성문 제출 강요

5-4. 학생의 의견표명의 자유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1. 학교 내 종교 개요

### (사례) 교장선생님이 애국조회 시간 전후로 모든 학생에게 기도할 것을 강요해요.

저는 종교가 따로 없지만 고등학교를 중립학교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매번 애국조회 시작과 종료시간 직전에 교장선생님이 기도를 하시고, 모든 학생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세요. 때로는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 등등의 말로 겁을 주기도 합니다. 중립학교에 진학한 것이 제 뜻도 아닌데 저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 (판단 및 조치) 중립학교에서도 학생의 종교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립학교는 각 종교의 성격과 특징, 추구하는 목적을 반영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도 종교교육의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립학교 역시 공교육 내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학교에 강제배정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종교 과목의 수강이나 부수적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중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의 교육이나 종교 활동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특정 종교 활동을 거부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조치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인권조례는 제15조 제1항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립학교가 애국조회 등 비종교적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기도를 종용하는 등의 종교적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모든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 ▷ 중립 사립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강제의 위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2010.4.22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중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3차 권고(2011년)】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재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 5-2. 흡연측정 강제

### (사례) 흡연이 명백히 의심스러운 학생에게 흡연측정을 강제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생활인권부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을 때, 담배 냄새가 심각하게 몸에 배어 있을 때, 흡연하는 친구들과 함께 적발되었을 때, 기타 흡연이 명백하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생 선도를 위해 흡연측정기를 통한 검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이런 강제행위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판단 및 조치) 흡연검사는 학생징계를 위한 증거수집 행위가 아니라 금연지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은 학교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제28조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도 학교 내에서 금연교육과 금연지도가 강력하게 이행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흡연측정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금연지도를 위해 흡연측정기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흡연측정기 검사나 소변검사 키트 등을 사용하는 방법은 생리적 검사행위이자,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강제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교칙이나 학교장의 학생지도 지침으로 상세한 운용규정을 마련하고 학생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흡연측정 검사를 학생이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거부행위를 흡연행위에 준용해서 선도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학생에게도 흡연학생과 동일한 금연지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학생의 금연지도를 위한 흡연측정기나 소변검사 키트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검사행위를 단순히 흡연학생의 징벌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학생 대상 금연지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흡연학생이든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이든 1차적으로는 금연지도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후 금연하게 되면 모든 징계조치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되, 이후에도 흡연이 지속되면 교칙에 따라 선도처분을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5-3. 반성문 제출 강요

### (사례) 반성문, 쓰기 싫는데 써야 하나요?

수업 중 탄 것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불러가 혼이 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A4 용지에 가득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셨어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별점을 부과하시겠대요. 교무실에서 혼이 난 후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도 드렸는데 반성문까지 쓰라니 이해가 안돼요. 솔직히 반성문을 써야 할 정도로 잘못을 했나도 모르겠어요.

### (판단 및 조치) 미성숙하고 고집스럽지만 학생들에게도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지도권한에 의해 교사는 학생을 훈계하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칙 위반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학교 공동체 윤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사로서 해당학생에게 훈계나 훈육의 일환으로 반성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기록케 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반성문 작성 요구는 우리 헌법에서도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학생의 양심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 대상 학생에게 지도의 이유와 목적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함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반성문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해당학생이 반성문의 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기 보다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인권부와 협의하여 해당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발전적 영향을 미치는 대안적 학생지도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가 일반적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불제출에 따른 추가적 불이익(별점 부과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시민에게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회사에서 직원에게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 (관련사례) ‘다시는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래요.

생활인권부에서 교내 봉사 징계 결정을 하면서 “다시는 교칙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재위반시 전학 등의 조치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굳이 각서를 써야 하나요? 이제 바르게 생활하려 하겠지만, 혹시 제가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다시 선도위원회를 열면 되지 않나요?

#### 서약서 등 제출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 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체벌금지의 학교방침이 있었음에도 임의적 기합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9. 10. 12. 결정)
- 2)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든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5. 12. 26. 결정)
- 3) 허가받지 않은 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8. 2. 28. 결정)



## 5-4. 학생의 의견표명의 자유

### (사례) 학교 밖에서 합법적으로 개최된 청소년 인권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고 징계를 내린대요.

저는 OO지역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합법적인 청소년인권단체 회원이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인권부에서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저를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합법적 집회에 참여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 (판단 및 조치)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학생들이 미성숙하여 항상 보호받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표명된 의견은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비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존중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학생들의 의견표명의 기회 보장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외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넓게 보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기본법」이 학교교육의 기본 취지를 민주시민교육으로 지향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서 민주주의 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규범상로나 사실상으로 학생들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의 표현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를 학교 내외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과 교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학교 측이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합법적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다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임이 분명합니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학교 교지, 인터넷홈페이지 등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40.98	28.45	26.40	2.40	1.77
중학교	18.20	28.16	45.27	5.17	3.19
일반고 고교	14.40	28.74	46.36	7.08	3.42
특성화 고교	13.49	25.59	49.01	7.69	4.22
계	21.77	27.73	41.76	5.59	3.15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49.5%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학교가 학생 언론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학교 내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6-1. 학생자치권의 보장
- 6-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절차와 학생참여
- 6-3.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 6-4. 학생회 외에 다른 학생기구 설립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6-1. 학생자치권의 보장

### (사례) 2학기 내내 전체 학생회와 학급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학생회를 통해 급식환경이나 벌점제도 개선 등 학교에 이런 저런 의견을 제출하고 싶지만, 2학기 내내 전체 학생회의는 물론 학급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께 여쭙보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매진하라며 학급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어디에 대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 (판단 및 조치) 정기적인 학생회의 개최와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학급회의 등 학생자치를 보장하는 시간이 일방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학생회를 통해 자신들의 복지 개선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학생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전체 학생을 대표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나 다른 교육활동에 밀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자치권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부합하는 학생자치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회 자치공간의 확보, 학생회 소집 및 운영의 자율권 보장, 학생자치 지도교육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지원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6-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와 학생참여

### (사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식이 형식적이에요!

우리 학교는 이번 학기 초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각 반별 학급회의를 거치지 않고 전체 대의원회의만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저는 생활인권규정의 개정을 위한 의견이 무척 많았지만 대의원이 아닌 관계로 어떠한 의견도 제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마저 개정된 생활인권규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인데도 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판단 및 조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개정절차에서 일부 의견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규정 전부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은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 측의 학생지도에 대해 가장 크게 불만을 드러내는 부분은 교칙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즉, 학교 측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과의 적절한 논의나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개정 사항을 결정해 놓고 학생에게 무조건 지키라고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을 포함한 규범의 제·개정에 있어 구성원 모두의 생각을 반영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범의 제·개정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적법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여 다수로부터 그 정당성을 부여 받음으로써 소수의 반대자에게까지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진정한 합의규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든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수렴된 의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37.43	28.45	29.25	3.06	1.81
중학교	16.13	25.09	44.10	9.29	5.38
일반고 고교	11.90	24.09	42.65	14.09	7.27
특성화 고교	12.50	22.02	44.84	12.74	7.90
계	19.49	24.91	40.21	9.79	5.59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44.4% 만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가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보장이 여전히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1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 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권고

### 6-3.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 (사례) 학생이라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나요?

OO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운동장 개선 사업 등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학생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생도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방법은 없나요?

#### (판단 및 조치) 학생도 학교운영의 주체입니다.

학생은 학교의 중심이며, 교육영역이든 행정영역이든 학교 내 대부분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학교의 일 주체로서 인정하고,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9조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바,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학생대표와 학교 관리자 간의 정기적 면담 실시하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주인정신과 애교심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학습하고 실천할 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6-4. 학생회 외의 다른 학생기구의 설립

### (사례) 학생회 외에 다른 학생기구를 설립할 수 없나요?

OO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회는 학교운영이나 학생복지 개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생회와 별도의 새로운 학생기구를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학교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기구를 만들어 활동하면 안 되나요?

### (판단 및 조치) 학생의 자발적 결사와 그 결사체의 의견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칙에 의해 설치된 학생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를 금지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7조는 학생의 자발적 결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가 법령이나 교육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는 이 학생기구에서 제출하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의견을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인권조례 제19조 제2항)

####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위한 대한민국 2012년 인권상황보고서」 중 ‘학생들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부분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도 없다. 다수의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들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례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7. 복지에 관한 권리

7-1. 위기학생 지원

7-2.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7-3. 건강에 관한 권리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1. 위기학생 지원

### (사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알고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자!

OO중학교 생활인권부장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자로 이미 선도조치를 받은 학생이 재차 학교폭력을 야기하여 보호자를 내교토록 요구하여 상담을 진행하던 중, 보호자가 폭력적 성향이 강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보호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 집에 들어가기도 무서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선도조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요?

### (판단 및 조치)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아동보호 조치가 필요 합니다.

학교 내 학생 보호조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인권 침해의 경우, 그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단체 등과 협의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아동을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나, 학교폭력의 측면에서는 가해자임이 분명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학생에게 적합한 선도 및 교육조치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징벌적 선도조치 보다는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회복 목적의 선도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7-2.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사례) 학교가 너무 더워요!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더운데 우리 학교는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아 교실 안이 찜통처럼 덥습니다. 최소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냉방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판단 및 조치) 적절한 냉방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된 학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노후문제나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이 사안의 경우 당시 더위에 비해 충분한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당시 학교 냉방시설 낙후와 전기요금 예산의 한계로 발생한 문제였기에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장에게, 현재의 냉방시설의 한계와 예산 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학교시설 중 학생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공간’에 대한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교실	운동장	통학로	화장실	탈의실	급식실	자치공간	도서실
초등학교	21.52	11.95	6.84	18.72	12.63	6.41	14.97	6.97
중학교	19.04	10.76	5.80	14.59	20.55	8.46	17.13	3.67
일반고	17.62	8.38	6.38	15.71	17.89	7.92	19.68	6.43
특성화고	15.54	7.15	7.77	20.28	20.44	6.60	16.32	5.91
계	18.43	9.56	6.70	17.32	17.88	7.35	17.02	5.75

학교시설 중 학생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공간은 ‘교실’ 18.4%, ‘탈의실’ 17.9%, ‘화장실’ 17.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환경시설의 개선은 단순히 학교 시설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7-3. 건강에 관한 권리

### (사례) 생리공결제도가 뭐예요?

저는 인권조례 제36조에 의해 구성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중학생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참여위원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학생참여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생리공결제'라는 제도를 처음 들어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여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의문도 생깁니다.

### (판단 및 조치) 학생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생리공결제도를 정비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생리로 인한 결석 등이 불이익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권조례 제24조 제2항에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출결이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생리공결제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교 측이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에 대한 부지로 인해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라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 (관련사례) 추위도 너무 추운데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말라 하십니다.

중학교 남학생입니다. 요즘은 늦가를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교복 위에 점퍼나 외투를 입고 싶지만, 선생님은 교문에서부터 외투를 벗으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감기가 들어 정말 추운데, 왜 학교는 외투를 못입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생리공결제, 안다" 26%뿐...초경 연령 '평균 11.98세'

요즘 초·중·고교 여학생들의 초경(初經)은 평균 11.98세 때 경험하고, 초경 연령은 어머니 세대보다 2.4세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보건교육포럼은 18일 한국갤럽의 자회사인 (주)베스트사이트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2학년) 여학생 3307명과 이들의 어머니 2760명을 상대로 조사한 초경 연령 변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초경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71.7%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집계돼 설문에 응한 어머니들의 평균 초경 연령(14.41세)과 비교해 2.43세가 낮았다. 보건교육포럼은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초경 연령은 1970년대 14.4세, 1998년 13.5세, 1999년 12.8세, 2005년 12.25세 등이다"며 "이번 조사결과 역시 여학생 초경의 저연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 응답자 중 상당수는 월경통이 있어도 그냥 참는 경우(56.6%)가 많았고, 응답자의 58.4%만이 부모로부터 월경지식을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해 관련 교육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건교육포럼은 지적했다.

'생리공결제'에 대해서도 학생 응답자 중 26%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12.5%는 생리공결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공결제'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해 출석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학생들의 월경통을 10점 척도(수치가 클수록 월경통이 큼)로 나눴을 때 평균치는 4.15점으로 학생들이 적잖은 통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답한 학생일수록 수치가 낮았다. 보건교육포럼은 "초경의 저연령화는 심신발달에 지장을 주고 일부 질병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교육포럼은 19일 국립의료원 내 스칸디나비아안클럽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여학생의 초경연구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헤럴드경제 2010-03-29 기사 내용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8.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8-1. 징계절차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8-2. 상벌점제와 학생인권

8-3. 징계 공고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8-1. 징계절차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 (사례) 아무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내일 선도위원회에 참석하래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앞뒤 설명없이 “내일 오후에 선도위원회가 열리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참석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놀라고 당황스러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여쭙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생각해 보니 학교가 왜 이리 급하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황없는 상황에서 저는 내일 선도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진술해야 하나요? 혹시 이렇게 급하게 개최하는 선도위원회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판단 및 조치) 선도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방어권이나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적절한 절차의 이행’이란, 단순히 ‘통지가 있었는가와’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었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사유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였는지를 알려 의견진술시 충분한 방어권과 항변권을 보장하였는지 등이 적절한 절차 이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조례 제25조는 “학생이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교가 형식적으로는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의 개최와 의견진술권에 관하여 사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방어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한 절차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은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학생과 보호자의 방어권이나 항변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서면통지 후로 선도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1) 교칙 위반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체벌을 하셨어요.

생활인권부에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다리를 걷어차고, 교무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부분은 알지만 체벌을 하면서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선생님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원합니다.

### (관련사례 2) 선도위원회에서 교감선생님의 일방적 훈계만 듣고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교칙 위반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고 연락이 와서 사고 이후 반성 정도, 향후 가정 내 지도방안 등에 대해 의견진술을 준비를 했는데, 의견진술은커녕 교감선생님의 훈계만 잔뜩 듣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관련사례 3) 정말 이 선도조치가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가요?

우리 아이가 평소 반항적이고 학습태도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호자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지도해 주신 담임선생님과 학교 측에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업 중 선생님께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 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알지만 학교 밖으로 아이를 내몰면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정말 선도이고 교육적 조치인가요?



**(관련사례 4) 선도위원회 결과를 전화로 설명하시면서 내일부터 출석정지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도 인정이 되고, 회사 사정상 선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오늘 선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결정이 있었으니, 내일부터 5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개인 사정상 선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어떤 이유와 경위로 이러한 결정이 있었는지, 혹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3차 권고(2011년)】**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 위반(2005. 9. 28. 결정)
2. 퇴학처분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2006. 5. 18. 결정)
3.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2006. 6. 28. 결정)

## 적법절차에 따른 선도위원회의 개최와 운영 방안

- 학교에서 힘들게 학생지도를 하고도,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관련 교사들이 주의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이행을 통해 징계절차 내에서도 학생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련 교사가 예기치 않은 인권침해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1) 선도위원회의 개최 통보는 사전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선도위원회의 개최 3일 전에 학생 징계사유와 개최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선도위원회 개최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술로 통지할 수 있으나, 담임교사 보다는 인권부장 등 선도위원회 개최에 관한 있는 교직원이 직접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두통지의 내용과 일시를 선도일지 등에 정확히 기재해 놓아야 합니다.

### 2) 징계 대상 학생의 조사과정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 선도대상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종 체벌, 언어폭력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호자들과 인권침해에 관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생 조사과정에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 복도나 교실 바닥에 꿰어앉히기, 교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장시간의 수업배제' 등의 인권침해적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대상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 선도위원회가 개최되면 선도대상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절차의 이유와 목적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항변권이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징계의 내용과 이행방법에서도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권조례 제25조 제2항은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조치가 단순히 학생의 행위에 대한 응징적 성격으로 결정·집행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학생의 행위에 비례하는 선도 및 교육조치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 5) 징계 결정의 내용과 이행 방법,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징계의 개요(①선도위원회 개최 이유, ②개최 일시, ③징계 결정 내용, ④징계 결정 이유, ⑤징계 조치의 이행 방법)와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⑥재심청구 방법과 기간 등)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구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담임교사보다는 인권부장 등 관한 있는 교직원이 통지하고, 사후에라도 반드시 서면통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8-2. 상벌점제와 학생인권

### (사례) 우리학교는 상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학교는 상벌점제를 운영하는데, 벌점은 학교생활 여기저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받게 되는 반면, 상점은 항목도 너무 적고 열심히 해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은 벌점을 받고 열심히 해서 상점으로 상쇄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이 더 크기도 합니다.

### (판단 및 조치) 상벌점제는 본래 상점 위주의 제도입니다.

체벌 대체제도로써 도입된 그린마일리지의 제도적 취지는 상점 위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질서 준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상점 보다는 벌점 위주의 항목을 구성하여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안처럼 상벌점제가 벌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인권침해적 제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벌점 위주의 적용과 이를 상쇄할 상점 부여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상벌점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래 상점 위주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장에게, 향후 교칙 개정 시 상벌점제를 상점위주의 제도로 변경하되, 개정 전까지 상점 부여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벌점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벌점을 부여하면서 왜 벌점을 부여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시 않아요. 심지어 제가 언제 벌점을 받았는지도 모르다가 한참 후에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통지 받을 때도 있어요.

## 8-3. 징계 공고

### (사례) 징계 받은 사실이 학교 현관에 게시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가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고, 재심청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징계내용이 이미 학교 현관에 게시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게시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판단 및 조치) 징계사실의 공표는 금지됩니다.

인권조례 제25조 제3항에 의해 학교에서의 징계 공표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는 징계 공표는 “흡연금지 3회 위반에 따라 1학년 2반 홍길동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학조치 하였습니다.”라고 징계대상 학생을 직접적 명시하는 것은 물론 ‘1학년 2반 홍OO 학생’, ‘1학년 2반 000’ 등 해당 학교 학생이라면 징계대상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이나 추정이 가능한 상태의 게시도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교내에서 흡연금지 3회 위반 행위자가 발생하여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학생을 전학조치 하였습니다.”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이런 공표나 게시행위 역시 학교 규모 등 특수한 사정으로 대상학생이 특정될 수 있다면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9.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9-1. 청원권 보호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1. 청원권 보호

### (사례) 학교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한 학생을 찾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자율학습 참여 강요행위가 있어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했는데, 학교에서 조사 통보를 받고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학생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 때문에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 (판단 및 조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인권조례 제26조 제3항은 “학생이 교육청이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인권침해에 관해 상담 또는 권리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교 측이 구제신청을 접수한 학생을 찾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의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비밀보장이란 소극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등 구제신청 관련 접수자가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조사대상이 된 학교 측이 구제신청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장에게, 구제신청인을 찾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향후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한 인지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38.02	26.03	29.94	3.51	2.50
중학교	16.74	23.67	47.47	7.11	5.01
일반고 고교	11.97	21.99	48.50	11.18	6.35
특성화 고교	13.12	21.96	50.24	8.17	6.51
계	19.96	23.41	44.04	7.49	5.09

학생 인권 상담 및 조사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43.4% 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상담 및 조사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 바,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해 더 많은 홍보와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10.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 10-1. 장애학생 괴롭힘
- 10-2. 장애학생 강제 식사지도
- 10-3. 장애학생 차별
- 10-4. 운동선수 인권보호

###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1. 장애학생 괴롭힘

### (사례) 친구들이 자꾸 장애인 친구를 놀리고 괴롭혀요.

우리 반에는 발달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자기 이름표를 가지고 장애인 친구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 본 후 대답하지 못하면 때릴 듯한 자세로 위협을 하거나 바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자꾸 주의를 주시지만 아이들의 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판단 및 조치사항) 장애학생에 대한 사소한 괴롭힘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즉시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자폐장애, 지적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능력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비장애학생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비해 은폐되거나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관심, 편견 등으로 엄연한 인권침해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친구들 간에 일상적인 장난이나 경미한 사고로 보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학생을 포함한 대다수의 장애학생들은 의사능력의 부족이나 심리적 위축 등의 이유로 친구들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싫다는 의사마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자기가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징후로 포착되더라도 “이번엔 별 피해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가벼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경미한 징후라도 포착되면 장애학생의 유형과 정도,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내용, 피해의 정도,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해 직접 또는 주변학생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특수교사 등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부서의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피해 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도 비장애학생들의 사소한 장난으로 보이지만, 자폐장애가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의해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학교에 장애학생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사례) 지적장애인 친구는 말뚝박기놀이에서 매번 술래 역할만 합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교실 뒤에서 말뚝박기놀이를 하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는 매번 말 역할만 합니다. 또래 도우미인 제가 비장애 친구들에게 항의하자 ‘바보랑 놀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며 오히려 저를 무시합니다.

### (관련사례) 일진 아이들이 이유 없이 지적장애학생의 뺨을 때려요.

우리 반에는 소위 일진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자기들끼리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유도 없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교실 뒤로 불러 뺨을 때립니다. 장애인 친구는 맞고 있으면서도 매번 웃는 얼굴이고, “괜찮냐?”고 물어보면 친구들과 장난을 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일진 아이들이 친구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고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2.5.7. 결정례)

피해자가 동일 가해학생들로부터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도우미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다. 진정내용의 2차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에는 공익요원의 배치도 없던 상태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2011. 3. 학급 분리조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바로 옆 반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1주일에 두 번의 체육시간은 합반을 하게 된 바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종종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재등교 이후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상황에 따른 적극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많이 완화되었을 것인데 학교 측의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비춰볼 때 미흡한 보호조치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보호, 이렇게 해 봅시다.

##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사안 처리 방안

- 장애인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등을 통해 보다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행위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교사들은 직무유기나 인권침해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장애학생 괴롭힘 사안처리의 모든 과정과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사소한 사안이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세요.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미한 괴롭힘 사안이라도 장애학생 당사자와 주변 학생들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의 정도, 지속성 등에 대해 확인하여 특수교사 등 장애학생지원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 담임선생님은 경미사안이라도 간략히 조사 내용을 교육일지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시고, 특수교사 등에게 사안을 인계한 내용과 일시 등도 기록해 주세요.
- 조사결과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즉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장애학생지원부서에 통보해 주세요. 이러한 통보는 '조사와 판단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문서'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담임교사가 우선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이라도 특수교사 등과 논의하여 가해학생과 주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를 진행해 주시고, 또래 도우미 등의 지정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이러한 조치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교육일지 형식으로 반드시 기록·관리해 주세요.
- 중대한 사안의 경우, 권한 있는 부서의 조치에 따라 보호절차와 교육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도 교육일지의 형식으로 기록·관리해 주세요.

### 3) 장애학생의 보호자에게 조사 경과와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해 주세요.

- 장애학생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담임교사 등 학교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 등 학교 관련자들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학교 측이 ①현재까지 확인한 내용과 현재의 보호조치 내용, ②향후 보호조치 계획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해 주세요. 물론 이러한 통지내용과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도 기록·관리해 주세요.
- 중대한 사안이거나 경미사안이라도 특이사안이라면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사안 처리 방안

### 1) 조사단계 :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큰 차이가 나며,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전달과정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를 참여케 하고, 그 의견을 조사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애학생에 의한 폭력행위가 의도적이지 않고 그 피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조사단계에서 종결처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합의종결 되는 사안이라도 반드시 전담기구는 정례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일괄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합의종결의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는 반드시 가해행위의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2) 심의단계 :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조치가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도 특수교사나 장애인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선도조치의 필요성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애학생의 유형 중 발달장애(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경우는 판단능력과 의사전달 능력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미약하므로, 의도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면 징벌적 조치를 지양하고, 장애학생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조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의 선도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도, 피해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반드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상의 선도조치를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도, 반드시 별도의 장애학생에 대한 가해행위의 위험성과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0-2. 장애학생 강제 식사지도

### (사례) 장애학생에 대한 식사지도도 인권침해인가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편식이 심해서 최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이가 식사 중에 구토를 하였는데, 보호자는 학교에서 강제로 밥을 먹인 것이 원인이라며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지도하면 식사습관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식사지도 매뉴얼에 따라 무리없이 지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의 식사지도도 인권침해인가요?

### (판단 및 조치) 식사지도의 내용과 환경에 대한 객관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편식개선지도와 같은 식사습관지도는 장애유아의 발육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식사습관지도가 아이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일반적 교육활동을 넘어 인권침해적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아의 거부 의사가 명백함에도 지속적으로 특정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하거나 유아의 의사와 상관없이 밥을 비벼주거나 말아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식개선지도에 있어서도 장애유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도가 있은 직후 바로 지도 내용을 알림장이나 유선 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강압적 지도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는 상담 또는 교육일지에 즉시 기록하고, 학교 관리자의 결재 등을 통해 적정한 지도였음을 확인해 놓는 절차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애유아에 대한 편식개선지도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 지도 내용 및 유아의 상태, 지도 결과 등을 교육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전화 통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행위라기 보다는 일반적 교육과정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인권보호, 이렇게 해 봅시다.

## 장애학생 대상 특별지도 방안

### 1) 개별화교육지원팀과 사전 논의합니다.

- 편식개선지도, 수업태도개선 지도 등 장애학생 대상 특별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그 지도의 필요성 여부와 지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별화교육계획에 이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별지도가 진행되는 경우, 교사의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강압적 지도 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 민원 발생 시 공신력 있는 소명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특별지도 계획과 결과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장애학생의 지도는 보호자와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특별지도의 진행이나 결과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도 계획이 마련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설명하고, 지도 진행단계와 지도 종료 단계에서도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 및 통지, 그리고 관련 기록의 작성 및 관리는 인권침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인권침해 분쟁 시 담당 교직원이 과실이 없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소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됨을 다시 한 번 인식합니다.

### 10-3. 장애학생 차별

#### (사례) 장애학생이 현장학습을 가려면 보호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왔는데, 앞으로 장애학생의 현장학습 참여를 원하면 보호자가 직접 보조인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자가 보조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학생은 도움반에 남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호자의 보조인력 참여를 강요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가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판단 및 조치) 현장학습을 포함한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장애인의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법 제13조 제3항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편의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현장학습 등 교외 교육활동에 참여할 것과 그에 따른 보조인력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 학교 측은 현장학습 활동에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보조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경우, 교내에 남아 있는 다른 반이나 학년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은 오히려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보호자에게 자원봉사의 형태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현장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은 반드시 학교 교직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복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자격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대체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차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장에게, 장애인 차별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연수의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 학교 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에 따른 장애학생 차별(국가인권위원회, 2003. 5. 21. 결정)

학교 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안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습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4. 운동선수 인권보호

### (사례) 코치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 있는 학생운동선수를 보았습니다.

집 주변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길을 가던 중 학교 운동장에서 코치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 있는 학생운동선수를 보았습니다. 무자비하게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훈련 중 지도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더군요.

### (판단 및 조치) 운동이나 훈련을 빙자한 체벌도 모두 금지됩니다.

학생운동선수의 경우 실력 향상과 훈련이나 경기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반 학생과 달리 심각한 체벌마저도 관행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선수에게도 체벌은 명백히 금지되어야 하며, 관행을 이유로 자행된 체벌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선수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은 교직원과 스포츠 지도자에게 체벌금지 등 물론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연수를 실시하고, 스포츠 지도자들은 이를 분명히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사례) 학생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학생운동선수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운동만 잘 하면 되지 굳이 제가 관심 없는 수업을 억지로 들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 시간에 훈련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기합을 주시는 코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운동선수 폭행 등 체육계 '고질병' 여전

(서울-연합뉴스, 2012.10.03자) 김연정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OO 의원은 3일 “최근 2년반 동안 운동선수의 폭력 등에 대한 상담 및 민원 신고가 1천여 건에 달했다”며 “체육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선수 폭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2010년~2012년 5월 선수고충처리센터 민원신고내역’ 자료를 인용, “최근 2년 반 동안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신고 177건, 상담 990건 등 총 1천16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2010년 496건에서 2011년 516건으로 1년 새 신고·상담이 20건 늘었으며 올해 1~5월에만 155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상담 내용 중 폭력이 297건(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이 58건(5%)이었고 그밖에 인권침해 등 기타가 812건(69.6%)이었다.

그러나 폭력·성폭력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2010년~2012년 5월에 신고가 접수된 총 177건 중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5건(19.8%)에 그쳤다. 징계율도 2010년 22.9%, 2011년 15.9%로 매년 줄어 처벌이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폭력 행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이행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6.결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할 것과, △위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제작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헌장,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폭력·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책 입안 시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 실행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 <학습권 보호 가이드라인>은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점과 이와 관련한 정부나 교육기관의 책임을 강조

- 또한, 일선 지도자가 오로지 경기 성적을 이유로 신분이나 지위를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의 핵심임을 표명



### 학생운동선수 인권증진 방안 관련 학생설문 결과

학교급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수업 배제 방지와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진학이나 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선 및 확충	체벌이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시스템 마련	기타
초등학교	38.79	25.44	29.12	6.65
중학교	28.08	38.45	26.12	7.35
일반고	26.82	45.92	19.80	7.46
특성화	22.78	47.85	21.06	8.31
계	29.12	39.42	24.02	7.44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39.4%의 학생이 '진학이나 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선 및 확충'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수업 배제 방지와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29.1%, '체벌이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시스템 마련' 24%가 뒤를 잇는다.

## Ⅲ. 학생인권 – 사례로 이해하기

### 11. <특별사례>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11-1. 학교폭력 인지 후 초기 대응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11-2. 학교폭력 조사단계 및 심의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11-3. 학교폭력 선도조치 결과 통지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11-4.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11-5. 학교폭력 여부의 입증에 어려운 사안의 처리 방안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11. 〈특별사례〉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사안 처리의 모든 절차와 최종 결정의 이행이나 불복절차에 있어서까지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만과 의문사항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인지 이후의 사안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선도·교육 조치가 결정되며, 그 조치사항이 집행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 사항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이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적 쟁점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피해자 측의 일방적 추측으로 편파적 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학생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했다는 주장, 자치위원회의 미숙한 심의나 사실인정의 오류로 인해 최종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자치위원회의 고유한 권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보장된 불복절차(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지,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인지이후 조사-심의-결정-집행단계에서도 가·피해자의 인격권, 알권리, 방어권, 의견진술권 등의 기본적 권리는 엄중히 보장되어야 하는 바, 결정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라면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문제가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은 자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변경을 가하는 의견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례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중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사례 제시에서 제외하였으며, 동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 행정처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며 인권친화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는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1-1. 학교폭력 인지 후 초기 대응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사례)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난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담임선생님께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았다고만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 아이가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우리 아이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징계해 주세요.

**(판단 및 조치) 학교폭력의 처리 내용과 과정, 결과 등은 반드시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접수보고 - 기초 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예비 판단 - 의견서 작성 후 전담기구 이관' 등의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간략한 일지형식으로라도 기록·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옹호기관의 조사결과, 이 사안의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가·피해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당한 관계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징계의 대상에 이르는 정도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접수보고서, 예비조사에 따른 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학교장에게 추후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서도 접수보고와 담임교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사례) 왕따 피해를 말씀드렸는데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을 야단치신 것이 다였습니다.**

요즈음 친구들이 저를 계속 따돌리고 있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을 불러 세우시고 앞으로 잘 지내라고 말씀하신 게 다였습니다. 이후 가해학생들과 관계만 더욱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 **학생 간 폭행 방치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07. 1. 15.결정)**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 학교측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 학교폭력 처리절차에서의 담임교사의 역할과 책임

### 1) 학교폭력 인지 후 예비조사 실시

- 어느 경로로든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담임교사에게 인지된 경우,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의 유형과 정도, 가해의 집단성이나 악의성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신속히 실시
- 예비조사를 토대로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통지 이행

### 2)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통지 의무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의무 발생
- 보고 및 통지의 형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장 보고는 학교폭력 접수 보고 형태로 진행하고, 보호자 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통지 가능

### 3) 예비조사를 토대로 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의견제시

- 담임교사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지침(교육부장관 훈령)' 등을 참고하여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구에 통보
- 같은 반 학생 간의 학교폭력은 가·피해 내용에 대한 전반적 예비조사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가·피해자 중 한 학생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구에 통보

#### 학교폭력 예비조사 관련 담임교사 의견서(예시안)

##### (1) 사안의 개요

- 2012. 6. 28.(목) 15시경 2학년 1반 교실에서 홍길동과 임격정 간에 책상 위치에 대한 말다툼 과정에서 상호 2~3회 주먹이 오가는 우발적인 충돌 발생

##### (2)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

- 홍길동과 임격정은 평소 원만히 지내오던 사이이며, 양자 간의 충돌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음
- 쌍방 모두 폭력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즉시 화해하였으므로 별도의 선도조치 없이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두 학생의 반성문 별첨)

##### (3) 보호자에 대한 통보

- 홍길동과 임격정의 물리적 충돌과 화해 과정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각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보호자들에게 가정내에서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요청하였으며, 보호자 모두 경미한 사안으로 담임교사에 의한 종결 처리에 동의함
- ▶ 홍길동의 어머니 통화 일시 : 2012. 6. 28. 18시 28분 경
- ▶ 임격정의 아버지 통화 일시 : 2012. 6. 29. 09시 46분 경

##### (4) 판단 및 조치 계획

- 2012.6. 28. 15시경 홍길동과 임격정 간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 상황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전담기구에 통보하여 자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종결처리 하고자 함
- 향후 두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해 통합과 치유 도모 예정
- 추후 3/4분기 자치위원회에 경미사안 처리에 대한 보고안건 보고예정

### 4) 담임교사 의견서 제출 이후의 처리절차

#### 가) 경미사안의 경우 처리 방안

-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 의견서가 제출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이 의견서의 내용을 존중하여 전담기구장인 교감의 결재를 얻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 단,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이러한 간이종결 처리 사안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정례적으로 열리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사후 승인 처리

#### 나)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의 처리 방안

-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자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행조치

▷ **【참고】 경미사안의 판단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입법예고안 참조〉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 가해학생이 그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성폭력 사안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경우란 해당 사안의 가해학생이 이전(동일 학교급)에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처리된 적이 있는 경우를 말함

## 11-2. 학교폭력 조사단계 및 심의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사례) 학교폭력 절차 개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해 왔기에 3일 후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니 진술할 의견이 있으면 내교해 달라는 담임선생님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된다고 하여 저는 송구스런 마음으로 학교폭력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의견진술을 준비하지 않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의 주동자로서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추후 재차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자치위원회의 추가 심의는 열리지 않고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은 보호자에게 사전에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렇게 줄속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단 및 조치) 조사단계와 심의단계에서 가·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학교장의 선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최소한의 적법절차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보장은 가·피해자의 방어권, 항변권, 의견진술권 등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보장 절차에 일부 흠결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피해자의 권리 보호의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주고, 추후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①자치위원회 회부 사유(학교폭력 가해사실), ②개최 일시, ③의견진술권의 행사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④최소한 자치위원회 개최 3일 전에 ⑤서면 통보를 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치위원회 개최 통지는 최초 학교폭력 인지사실 통지와 달리 담임교사가 아닌 전담기구의 권한 있는 교사가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내교하여 상세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최 통지를 담임교사가 구두로 이행한 점, 자치위원회 회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다는 점,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방어권이나 항변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장 및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관련사례1) 조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아침 등교 시부터 5교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수업에 참여보내지 않았고, 그 긴 조사 대기시간에는 교무실 복도에 세워 놓거나 무릎을 꿇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권 침해도 그렇지만, 조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학교 측의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수업배제가 필요한 경우의 조치 사항

- 학교가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학교폭력 관련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수업 외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즉시 조사하는 것이 선도와 교육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며, 조사를 위한 다른 시간적, 방법적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배제시키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수업을 배제하고 조사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가?

가) 조사 대상 사안의 규모를 고려할 것

-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대성
- 관련 학생이 다수인가의 여부

나) 조사 시간과 방법의 긴급성을 고려할 것

- 쉬는 시간·점심시간·방과 후 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의 여부
- 대면조사가 장시간 필요한 사안인가의 여부

### 2) 적법한 수업배제 조사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은?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 계획' 문서의 작성

- ① 학생조사의 목적 ② 수업배제 상태에서의 조사 필요성 및 긴급성 ③ 조사일정과 방법
- ④ 향후 조치계획(수업배제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 방법 포함) 등을 간단히 언급한 문서를 작성

나) 학교장의 사전 결재(또는 사후 승인결재)

- 위 문서를 학교장 사전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승인 결재로 대체 가능

### 3) 수업시간 중 조사의 적정한 범위와 추가조치

가) 최소 시간 조사

- 가능한 한 신속한 조사로 수업배제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업배제를 통한 조사를 학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사용 금지
-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연속적으로 수업시간을 배제하기 보다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 학생이 선택한 시간에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추가조치

- 보호자에게 수업배제 후 조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통지
- 수업결손 보충 요청이 있는 경우 대안 제시

**(관련사례2) 가해학생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벌을 했습니다.**

-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가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래도 인정하지 않자 복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출석부로 머리를 내려쳤어요. 이후 교실이나 운동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추궁하여 조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권보장, 이렇게 해 봅시다.**

**가 ·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친화적 조사 예시**

1) 피해학생 조사

-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조사 진행
- **피해학생 측의 사전 동의없이 가해자와의 대질 금지**
- 피해의 유형과 정도, 학교폭력 피해의 구체적인 사실, 가해학생 명단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필요
- 학생이 전담기구의 교사와 면담을 어려워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나 담임교사의 지원 요청 검토

2) 가해학생 조사

- 피해학생 조사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수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사(허위진술 또는 진술조작 방지 필요)
-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시 강압적 조사(체벌, 고압적 언행, 진술 내용 강요 등) 금지**
- '진술서'보다는 '자기변론서'의 형식으로 자유로운 서면 진술을 보장
- '자기변론서' 말미에 가해학생에게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 확인 후 서명을 받도록 함

〈가해학생 진술서 양식 예시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에 따른  
자 기 변 론 서(예시안)**

성명 :

소속 :        학년        반

1. 피해학생의 피해 주장 개요 (피해주장 사실의 개요를 조사자가 사전에 기술하여 줄 것)
2. 인정사실 및 반론
  - 가. 인정사실 (피해주장 사실에 대해 가해학생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설명)
  - 나. 반론 (피해주장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항변할 내용이 있는 경우 기술하도록 설명)
3. 기타 참고사항 (기타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조사·심의 단계에서 참고할 개인적 환경 등에 대해 기술하도록 설명)

위 자기변론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진술학생        (서명)</div>
위 진술 내용에 대해 낭독하여 고지한 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조사자                (서명)</div>

**(관련사례3) 자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담임선생님은 제가 출석정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담임선생님이 수업 전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 제가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관련사례4) 저한테 묻지도 않고 가해학생과 대질 조사를 하셨어요.**

최근 지속적으로 폭행과 왕따를 당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가해학생들과 함께 조사를 하셨어요. 가해학생들의 눈빛만 봐도 저를 비웃는 것 같아 무섭고 너무 힘들었어요.

**(관련사례5) 가해자 측 의견진술 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모두를 함께 들어오라고 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학교 측은 시간문제로 한꺼번에 들어와 순서대로 의견을 진술하라고 했어요. 공동가해자의 보호자이기도 했지만, 의견진술을 할 때 웬지 신경이 쓰이고 가해자 간 서로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서로 간에도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관련사례6) 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던 학부모위원이 가해사실을 동네에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리 시 참석했던 학부모위원이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공적인 지위에서 알게된 사실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나요?

## 자치위원의 회의 진행 시 유의사항

### 1) 자치위원회 개의 직후의 조치

- 위원장 및 자치위원의 심의·의결 단계에서의 책임
  - 학교폭력사안의 판단에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할 의무
  -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엄중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벌인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교 측은 자치위원에게 미리 배포한 비밀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자치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한

### 비밀준수서약서(예시안)

성명 :

소속 : OO중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 본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지득한 사실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2. O.

자치위원 (서명)

OO중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위 서약서는 자치위원에게 내심의 옳고 그름을 추지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자치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이므로 자치위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2) 당사자 의견청취 및 질의 과정에서의 유의점

- 의견청취 이전의 단계에서 고지할 사항
  - 가·피해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의 개최 목적과 선도조치의 목적이 응징이나 징벌보다는 당사자 간의 치유와 복귀, 통합에 있음을 사전에 설명할 것(단, 이러한 설명이 마치 사건 내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 필요)
  - 학부모의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가·피해 학생의 학교적응이라는 교육적 조치가 자치위원회의 개최 목적임'을 설명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절차(수사기관에의 고소 등)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
- 의견청취 과정
  - 가·피해 당사자 모두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
  - 장시간의 의견진술이 예상되는 경우 쟁점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유도
  - 당사자 진술 중 말을 끊거나 중간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핵심 위주로 진술을 짧게 해 줄 것을 적정 시점에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함(의견진술 청취 개시 전에 쟁점별로 진술사항을 간략히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쟁점별로 10분 내지 15분의 진술 시간을 제시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 당사자가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규의 내용과 교육기관의 조치 목적(응징이나 처벌보다는 학생의 치유와 복귀, 통합 우선)을 재차 설명하고 적법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조치될 것임을 안내
  - 피해자 측의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나 가해자 측의 무책임한 부인 또는 무리한 선처 요구에는 법적, 사실적 한계를 설명하여 원칙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

○ 당사자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유의점

- 자치위원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 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절한 교육조치를 결정하는 심판자이지, 책임교사와 같이 사실관계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조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잘못을 추궁하는 형태의 질의를 하거나 일방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몰아 부치는 형태의 질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없는 감정적 평가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측을 자극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하며, 양 당사자나 참고인 등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예 : '가해학생이 평소에도 품행이 바르지 못했다', '피해학생이 평소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 품행이 바르지 못했다', '피해자가 소심하거나 우울증 증세가 있지 않은가?', '누구누구 엄마로부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말을 들었다' 등등)
- 사실관계 확정 이전의 심의 단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자치위원장 또는 자치위원의 사전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가 향후 어떠한 방향의 조치가 가능하다고거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예: '지금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평소 품행과 가해 정도를 고려한다면 전학조치가 아니라 출석정지 10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가해자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겠다.', '가해학생은 전학을 가야 마땅하다.' 등등)

○ 가·피해자 의견진술 방식 및 당사자 대질의 적정성

- 가·피해자 측의 진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하여 청취하는 것이 적정함
-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질의·답변케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가·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의 동의를 있다고 하여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대질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가·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대질이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조치내용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양 당사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을 것임

3) 사실관계 확정에서의 유의점

- 학교폭력의 사실관계는 가·피해학생의 진술과 학교 책임교사의 조사를 토대로 판단하되, 주요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함
- 사안의 기초가 된 학교폭력 사안과 무관한 가·피해학생의 평소 품행에 대해 선입견이 개입된 판단을 유도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는 상태에서 상황적 심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아야 함
-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재조사 또는 증거 자료의 보완과 추가를 책임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피해학생의 의견진술 내용 중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하여 다른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책임교사에게 추가 조사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당사자 간의 조정이나 합의 유도의 한계

- 학교폭력의 내용이 경미한 사안임에도 당사자 간 감정적 손상이 커져 불필요한 대립이 되고 있는 경우 합리적 조정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함
- 단,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강요하는 투의 요구나 가해학생 측에 사과를 강요하는 투의 진행은 지양(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으로부터 편파적 심의라는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11-3. 학교폭력 선도조치 결과 통지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사례) 자치위원회의 선도결정을 우리 아이를 통해 들었어요.**

자치위원회가 끝나 후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더니, 오늘 우리 아이를 통해 출석정지 10일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주네요.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아이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 어떻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학교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판단 및 조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서면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으면, 가·피해자의 알권리나 재심청구권 등의 불복절차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결정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통지서에는 ‘①자치위원회 심의 대상 사실(학교폭력 가해사실), ②심의에 따른 조치 결정 내용(가해학생 선도조치 사항), ③간략한 결정 이유, ④선도조치 이행의 방법, ⑤재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와 방법, ⑥문의사항 관련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적정한 통지가 없었다고 볼 것인바,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다시 결과통지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관련사례) 자치위원회의 선도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아이가 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수이라는 선도조치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싶은데, 학교의 결과통지서에는 이러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불복할 방법이 없나요?

## 11-4.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사례 1) 가해학생 보호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학생 보호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중학교 인권부장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자와 합의를 해 보겠다고 하며, 피해학생 보호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양 측이 합의를 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만,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듯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통화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합니다. 제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해도 되나요?

### (판단 및 조치)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없이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하거나 양 측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더라도,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신상정보의 공개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학교 측은 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양 측의 합의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례 2) 담당 경찰이 학교 측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중학교 인권부장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경찰이 전화로 전담기구의 조사자료와 기타 가해학생의 신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해 왔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것은 알지만 수사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데,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어느 범위까지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 (판단 및 조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절차에 따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사안에서와 같이 담당 형사가 전화나 학교방문을 통해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제공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담당 경찰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시행을 요구한 후, 정식의 공문이 접수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더라도,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범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1-5. 학교폭력 여부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의 처리 방안

**(사례 1) 피해학생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가해학생은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인권부장입니다. 피해학생은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피해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가해학생은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급 학생 전체에 대해 설문도 하고, 목격자 진술도 들어 보았지만, 현재까지 양 측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지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태도와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전문의와의 상담진료까지 받고 있는 정황을 보면 어느 정도의 따돌림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지만, 가해학생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해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판단 및 조치) 양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사안을 종결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법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준사법적 기관에서도 수사나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기각)'하게 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 수사나 조사권이 없이 임의적 조사만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할 수 있는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피해주장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는 경우라면, 이는 '학교폭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으므로 피해학생의 주장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 내용을 가·피해자 측에 통보할 때 반드시 '향후 학교폭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새로운 학교폭력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부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전담기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2) 입증이 어려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중학교 인권부장입니다.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주장과 달리 가해학생은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고소로 경찰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고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판단 및 조치) 경찰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담기구의 모든 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 상 수사결과가 조속한 시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면, 추후 새로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현재 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결정 이후 자치위원회를 재개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담기구나 자치위원회에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 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 측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절차를 우선 종결한 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자치위원회 심의를 일시 중단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지도·자문 위원

- 이관주(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 강윤석(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장)
- 오덕환(경기도교육청 생활인권담당장학관)

● 기획 위원

- |                    |                        |
|--------------------|------------------------|
| 오상환(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강인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서미향(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심춘보(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정승자(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강문환(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김문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홍수민(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이순용(발안바이오회고등학교 교사) | 김수진(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 변호사) |

● 집필위원

- |                     |                      |
|---------------------|----------------------|
| 김형욱(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전지선(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주무관)  |
| 김민태(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조현정(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주무관)  |
| 김태영(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구선희(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주무관) |
| 허연실(경기도교육청 주무관)     | 김경은(경기도교육청 전문상담사)    |
|                     | 박선미(경기도교육청 전문상담사)    |

##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발행일 : 2013년 2월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 (031) 249-0114



## 소통과 나눔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친화적 교육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규범입니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위한 인권가이드 라인입니다.

- 선생님은 잠재적 학생인권 침해자가 아니라 1차적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조례는 선생님에게 인권적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선생님은 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공익적 차원의 교권을 조례가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활용방안

- 선생님은 인권조례를 학생인권 수업에 활용 하실 수 있으며, 인권적 학생지도의 근거 규범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이용 방법



상담 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 오전9시~12시, 오후 1시~6시

상담은 해당 학교 위치의 옹호관실로 연락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연락처 및 사무실 위치

### 제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실

- 사무실 : 성남교육지원청 2층
- 연락처 : Tel.031-780-2694  
Fax.031-708-6592
- 관할지역
  - 성남, 수원, 용인, 양평, 이천, 여주, 안성, 평택, 광주하남

### 제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실

- 사무실 : 안산교육지원청
- 연락처 : Tel.031-412-4648  
Fax.031-487-3339
- 관할지역
  - 안산, 시흥, 김포, 부천, 광명, 화성오산, 군포의왕, 안양과천

### 제 3권역 학생인권옹호관실

- 사무실 : 의정부교육지원청
- 연락처 : Tel.031-820-0192  
Fax.031-820-0194
- 관할지역
  -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의정부,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